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적극행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감사원



현재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경제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제도와 행정이 경제·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하에 ‘적극행정 지원체제’ 정착·확산을 위한 범정부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공직사회와 수시로 소통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감사원이 2019년 1월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 있고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받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총 670개 기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30%에 이를 정도로 아직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해 공직자들과 공유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수행한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2020)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되 그 배경이 된 불합리하거나 불완전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비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합리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존중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적극행정이 습관이 되고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감사원장

최재형

책구성

사례집은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3장. 「적극 행정면책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에서는 현재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적극 행정지원제도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에서는 제도의 개념, 도입 배경,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와 함께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전컨설팅 사례와 자체감사기구의 대상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에서는 제도의 개념,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면책 기준별로 인정·불인정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며,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면책 사례도 대상 업무 유형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취지와 운영 절차, 기준 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적극행정·소신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향후 사례집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1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12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13
1) 사전컨설팅 제도	13
2) 적극행정면책 제도	13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14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14
5) 교육 및 홍보	15

CONTENTS

제2장

2

사전컨설팅 제도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20
1. 사전컨설팅 제도란?	21
2. 도입 배경	22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25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6
2. 사전컨설팅 수행 절차	27
1)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27
2) 사전컨설팅 처리	29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30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32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검색	35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37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38
1) 경제 활성화 및 국가 혁신성장 지원	39
2) 국민 권익보호 및 불편 해소	59
3) 국민 안전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71
4) 업무 지원을 통한 행정효율 제고	79
5) 기관 간 이견 조정	93
6) 업무처리 기준 제시	102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111
1) 인허가	112
2) 토지·개발	117
3) 공사·계약	122
4) 기타	130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40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141
2. 연혁 및 운영 실적	142
3. 최근의 주요 개선 내용	143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 절차	146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147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149
1) 감사원 감사의 경우	149
2) 자체감사의 경우	156
참고 적극행정면책 관련 Q&A	157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160

제3절 면책 사례	163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164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165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195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19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19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231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257
1) 계약	258
2) 시설·재산관리	262
3) 예산집행	268
4) 기타	272

참고자료

1.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276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277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278
4.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법규	281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적극행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

모범사례 포상 제도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교육 및 홍보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공직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사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높아져 공직자들이 창의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면책
제도 도입 등 적극
행정 풍토를 위해
지속 노력

이에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2월 이를 법제화 하였으며, 2015년 9월 적극행정면책 등 소명신청사항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 사회에 적극적 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소극적
행태가 지속되어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노력 추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지속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여전히 감사를 의식하여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8년 2월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상설조직인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감사부작용을 해소하고 적극적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1) 사전컨설팅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선 행정기관들이 법령의 해석·적용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감사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직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감사원이 함께
고민

※ 제도 도입 배경, 운영 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설명

2) 적극행정면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1월 당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5년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시행 근거를 마련한 후 계속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면책제도 도입
이후 자문위 구성,
현장면책 도입,
면책기준 완화 등
활성화방안 지속
추진

이에 2018년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면책 여부를 감사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는 ‘현장면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입 배경, 연혁, 운영 실적 및 주요 개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설명

모범사례를 발굴
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전파 중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모범사례 포상 제도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모범공직자와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1982년부터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선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으나, 그간 발굴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2018년 7월 「모범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이후 감사원에서 발굴한 모범사례를 유형화하여 모범사례 발굴·조사 시 참고하도록 자체감사기구에 배포하였고, 자체감사기구로부터 모범사례 후보를 추천받아 관련 감사를 통해 점검한 후 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범사례 추천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의 ‘모범사례 추천’ 게시판을 통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로 선정된 공직자·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상급기관장·당해기관장 표창 및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한 모범사례는 1995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모범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모범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선정된 모범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 (모범사례 ▶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사례)에서 확인 가능

기업활동의
불편·부담을
청취하여
해결하는 한편,
규제 개선
감사를 추진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감사원은 선례답습·소극행정·불공정관행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업무담당자의 소극적 행위 등 기업 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폭넓게 제보받아 ‘기업 불편·부담 현장

점검반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나 업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항 등은 감사부서와 협력하여 실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소극행정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소극행정이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개선 감사에서는 기업인 면담,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사례를 수집하여 산업·경제활동에 직결되는 개선요구사항, 개선이 시급하지만 소극행정으로 개선이 더딘 사항 등을 발굴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교육 및 홍보

감사원은 각종 사례집 및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일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7월에는 면책 신청 또는 면책 인정 여부 검토 시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감사원에서 처리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의 인정·불인정 사례를 분석·유형화한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계약 분야에 대하여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및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는 감사원 홈페이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 ▶ 사례집)와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그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일선 공직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최근 개선된 면책심의프로세스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고 최신 사례를 안내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

적극행정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3월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 방안」의 4대 추진 방향: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위 방안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규정에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근거 조항(제5조, 제16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 • 효과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 손해배상 소송, 징계·고소 관련 법률전문가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 상습적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

또한 2019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적극행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감사원

감
사
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적극행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제 2 장

2

사전컨설팅 제도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사전컨설팅 제도란?

도입 배경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사전컨설팅의 신청 주체 및 대상 업무

사전컨설팅 수행 절차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
1. 사전컨설팅 제도란?
 2. 도입 배경



1. 사전컨설팅 제도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9년 1월 사전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19년 1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감사원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운영 중이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15년
법제화된 후
점차 확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2개 중앙부처에서 우선 도입하였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8년 7월 각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복잡하거나 제도·규정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일선 기관에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

이에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에서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주고자 도입한 제도가 바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입니다.

즉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감사원법」상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 지원 규정 및 회계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가 아닌 “사전컨설팅”으로 명명한 것은 감사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사 활동과는 다른 지원활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 ②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2. 도입 배경

감사원은 국가 발전의 한 축인 공직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의사결정을 사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공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 및 감사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면책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불안감 여전

이에 업무를 처리하기 전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의 판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일선기관으로서 감수해야 했던 리스크를 감사원이 함께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선 기관의
리스크를
감사원이 함께
부담하여 적극적
업무처리 유도

감사원은 2019년 2월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사항”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사실을 공표하였고 현재까지 사전컨설팅을 해 오면서 공직사회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과 더불어 전 부처 차원에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고, 해당 규정 내에 사전컨설팅(의견 제시 요청) 수행의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범부처적 적극행정 확산 노력으로 2019년 12월 기준 총 44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7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
1. 사전컨설팅의 신청 주체 및 대상 업무
 2. 사전컨설팅 수행 절차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사전컨설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이
신청 가능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

1. 사전컨설팅의 신청 주체 및 대상 업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인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므로 신청 주체는 현재 사전컨설팅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입니다.

만약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광역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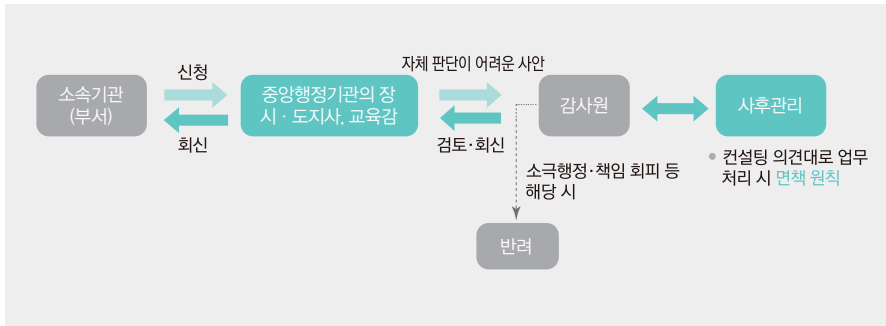
그리고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는 행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자체감사 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업무에 도움을 준다는 제도의 목적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 자체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성의한 신청 등 특정한 경우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대상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 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사전컨설팅 수행 절차



1)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먼저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명의 공문을
감사원에 송부

신청서에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사유 및 관련 증빙·근거법령·해당 사업의 세부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자체감사기구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쳤는데도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과정 없이 단순히 감사원에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향을 질의하거나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청이 접수될 경우 반려처리됩니다.

사전컨설팅 반려 사례

1. 자체 판단해야 할 사항

- A부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질의
→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 여부 및 고발기준 적용은 행정청이 일정한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재량으로 처리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려
- B교육청에서 대회 참가 자격이 없는 학교장의 자녀가 참가단과 동행하면서 사용한 학교발전 기금(식비 및 간식비)을 학교장의 향응수수로 보아 징계시효 5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기관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려
- C부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라 C부의 검토·심의에 따라 처리할 사항에 해당하고, 절차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려

2. 사실관계 확정에 관한 사항

- D공사는 발주한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 그간 지급받지 못한 보수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실제 시공내역 등이 먼저 확정되어야 해결 가능한 민사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규정의 해석 등이 아닌 사실관계 확정 사항에 해당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 해결할 여지가 있는바 반려

3.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

- E부는 기관의 기처분 사항에 대해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민간업체와의 분쟁 해결방법, 협의수준 등의 적정성을 질의
→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후속조치 처리가 완료된바 기집행사항에 해당하여 반려

4. 자체 검토가 미비하거나 타 기관 컨설팅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항

- F도에서 국유지 매입 및 수익매각 가능 여부 질의
→ 공유재산 매각 외 농어촌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등 기타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바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려
- G시에서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의 폐지·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질의
→ 이미 같은 내용에 대해 H부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받은바 있으므로 반려

②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감사원에 송부하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사전컨설팅 처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① **(사전컨설팅 실시)** 서면검토를 기본으로 사전컨설팅 사안을 검토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합니다.

서면검토,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전 컨설팅 사안 검토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 소관 중앙부처 및 관련 감사 부서의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②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신청사항 중 대국민 영향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 그 중요도가 큰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큰 사안은 자문위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검토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에는 감사원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법률·행정·기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위원도 참여하여 컨설팅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합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 개요

- **[구성]**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감사원장이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자 중 컨설팅 건과 관련한 전문가로 지정된 외부위원으로 구성
- **[기능]**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신청 사안이 다수 부처와 관계되어 있고 관계부처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개최
- **[운영]**
필요시 개최, 매 회의에 5명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참여, 지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검토 완료 후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
하여 신청기관에
송부

③ **(컨설팅 의견 통보)**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면 검토 내용 및 최종 의견을 담은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60일 이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 의견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사전컨설팅 의견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이 감사원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책 추정하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이 있을 때에는
면책 적용 제외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때 적극행정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안의 '동일성', '정보의 '충분성', '사적인 이해관계의 배제'입니다.

사전컨설팅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적극행정면책 판단 기준

- ① (동일성)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②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 ③ (사적인 이해관계의 배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1.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www.bai.go.kr) → 하단의 [사전컨설팅 및 법령해석·답변 제도] 배너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BAI). The header includes the BAI logo and the tex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Navigation links include 'HOME', '사이트맵', '이런이마당', 'ENGLISH', and social media icon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image of a modern building with the text '감사원'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overlaid. To the right of the banner, there is a section titled '감사원, 이라크 및 쿠르드 자치정부 감사원 감...'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Iraq and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Audit and Inspection...). Below this, there is a list of recent news items.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s a search bar and a list of recent audit result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row of service banners, including '사전컨설팅 및 법령해석·답변 제도' (Pre-audit Consult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Response System),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2. 사전컨설팅 맨 아래에 “사전컨설팅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컨설팅 및 감사원 법령해석·답변제도

사전컨설팅

회계관련법령의 해석·답변

감사원 소관법령의 해석·답변

사전컨설팅

1.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개념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착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외사결정에 애도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적극행정연혁 등 감사소통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2. 신청주체·대상 및 절차

- (1) 신청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의 교육감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소속기관 등은 먼저 소관 관공처·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소관 관공처·자치단체의 감사부서장이 검토를 한 후 감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컨설팅 대상**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지 않은 경우
 - ③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무당에 부 합의를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 (3) 신청방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주체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부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송부합니다.
- (4) 검토 및 결과회신**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사전컨설팅팀)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중요사안의 경우 자문위원의 논의를 거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자문위원의 논의 시 60일)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 연장 가능
- (5)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11-2736(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사전컨설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 신청서

3. 신청서 작성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명의로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접수

○○광역시교육청

수신 감사원장(적극행정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출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17(2019.1.14.)호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사전컨설팅 신청서(○○광역시교육청) 1부.
2. 첨부자료 4부. 끝.

○○광역시교육감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검색

- 감사원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사전컨설팅 게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 각 자체감사기구가 기수행한 사전컨설팅감사 수행 실적을 등록하고, 개별 사례를 검색·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유사사항에 대해 일관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 방법 ▼

1.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gonggam.go.kr) 접속 후 “자체감사” - “사전컨설팅” 메뉴 - 입력

The screenshot shows the '공공감사정보시스템' (Gonggam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enu with '자체감사' (Self-audit) selected, and '사전컨설팅' (Pre-conference) is highlighted under it. The main area displays a table of pre-conference cases. The table has columns for NO, 기관명 (Institution Name), 분류 (Category), 제목 (Title), and 첨부파일 (Attachment). The '입력' (Input) button is circled in red.

NO	기관명	분류	제목	첨부파일
6	감사원	기타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특약등기 관련	
5	감사원	회계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 관련	
4		기타	'내 민간투자자 해수물장 운영 가능여부(2019-3)	
3	감사원	토지	OO 도유지 수익계약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사항	
2	감사원	회계	유치원 교사사실 임대 수익계약 관련	
1		환경	통합허가보관서류(고령연료사용허가증빙서류)등 적법성 검토요청(201	

2. 입력 화면에서 제목, 내용(요약)을 기재한 후 신청서 및 회신의견서를 첨부 (첨부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 검색 방법 ▼

① 실시기관 ② 제목·내용 ③ 업무분류(회계, 개발행위, 건축, 토지, 환경, 기타)로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검색

NO.	기관명	분류	제목	첨부파일
5	감사원	기타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특약통기 관한	
5	감사원	회계	민원포털사이트에서 정부구체카드를 사용한 구매 관련	
4	감사원	기타	국립현대미술관 부속 건물 내부(2019-3)	
3	감사원	토지	OO 도유지 수의계약 및 종합대리 수임 관련 사항	
2	감사원	회계	유지용 교 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1	감사원	환경	매가보관서류(고령면토사종합개발부서)를 적법성 검토요청(201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12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신청기관에 회신한 사전컨설팅 사례를 수록하여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검토의견 도출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는 사전컨설팅의 운영 성과별로 분류하였고 신청 배경, 신청 요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및 의견, 이행 결과 및 효과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운영 성과	주요 사례
경제 활성화 및 국가 혁신성장 지원	- 저신용 국가 내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 시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공동운영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납품된 물품의 하자 발생 시 자발적 리콜에 관한 사항 - 사용폐지 도로 내 마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 권익보호 및 불편 해소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시설 임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농경지 대부·매각에 관한 사항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국민 안전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 관한 사항 - 원인자 불명 불법투기 폐기물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 전망시설의 법적 성격 및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 제고	-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 매각·양여 특약등기에 관한 사항 -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기존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에 관한 사항 - 재공고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이견 조정	- 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 기준 제시	- 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 과징금 부과기업의 회생계획안 동의에 관한 사항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숙사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

1 경제 활성화 및 국가 혁신성장 지원

최근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반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공직사회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급변하는 데 반해 관련 법·제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에 대한 리스크와 실패에 따른 책임소재가 적극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으로 접수된 다양한 경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한도 내에서 변화한 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청기관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어려움 없이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① 저신용 국가 내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 시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 ②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 ③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④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⑤ 산업단지 내 공동운영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⑥ 납품된 물품의 하자 발생 시 자발적 리콜에 관한 사항
- ⑦ 사용폐지 도로 내 마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사례

저신용 국가 내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 시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2019년 2월 A부는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저신용 국가 내 사업 수주를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한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계정”의 자금공급 시 심사 기준인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의 경우 사업성에 따라 지원자금 상환의 확실성을 충실히 심사함을 의미하는데
- 저신용 국가 내 사업은 높은 위험이 불가피하여 “특별계정”의 자금 공급 시에도 일반계정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극적인 수주지원이 곤란



신청 요지

- “특별계정” 설치 및 자금공급 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제25조(업무의 제한)

검토 결과 및 의견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 해외투자 등 분야의 자금 공급을 위해 대출·어음할인·채무보증 등을 하는 경우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법 제25조 제1항)
- 한편 제18조 제5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 및 채권 취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 한도를 정부출자·차입금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5항 등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수준의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우리 기업의 저신용 국가 내 수주경쟁력 제고, 상대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통한 국익도모, 금융지원 대상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선정,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2019년 6월 대상 선정·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특별계정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 취급규정」 제정, 기본 원칙·거래 상대국·지원대상사업 등 대상선정기준과 대출금액·대출기간·상환방법 등 금융조건은 물론 개별사업 승인절차·사후관리·면책 등 업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이후 국내 기업이 수주한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사업에 금융지원(3.7억 달러)을 실시하는 등 저신용 국가 내 사업 수주를 지원 중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업무담당자들의 막연한 우려 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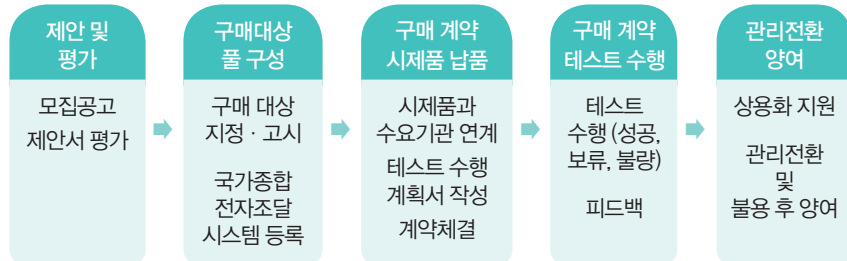
2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청은 2019년부터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테스트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제품을 현장에서 적용해보도록 한 후 판로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

- 상용화 이전 기술혁신 시제품의 제안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테스트 수행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A청 예산으로 시제품을 구매하여 테스트하는 방식

〈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업무 흐름 〉



- 테스트 결과를 업체 또는 일반에 공개하는 등으로 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이후 테스트를 수행한 기관에 시제품을 관리전환 또는 양여하는 계획

신청 요지

- 시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해 테스트 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 수준(이하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으로 검사·검수하지 아니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 수준(이하 “조달시스템 등록 수준”)으로 검사·검수하고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검수), 제21조(보증)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시제품 시범구매)

㉔ 검토 결과 및 의견

- 위 사업의 목적은 기술혁신 시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있고
- 구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A청에서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받은 후 업체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면 “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그 결과를 성공·보류·불량으로 평가하고 업체는 테스트 수행 후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시제품 구매계약의 목적물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에 반드시 부합하는 시제품의 납품으로 볼 것은 아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시제품 납품과 그 시제품의 현장적용 가능성의 테스트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이 지정·고시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동 시제품을 납품받는 내용으로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수준에서 검사·검수하고 품질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기술혁신 시제품의 구매대상은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명확하고, 동 구매계약은 시제품의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계약이므로 “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업체가 용역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받게 될 제재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기술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66개 제품 중 인공지능, 스마트 IOT 등 28개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에는 300개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
- 2019년 12월 B교육청에서 ‘차량 내 간헐 방지 정보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38개 기관에서 31개 시제품에 대한 계약 체결
-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시 설정할 계약목적물의 범위와 그에 따른 규격과 품질 수준을 명확히 해석하여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

사례

3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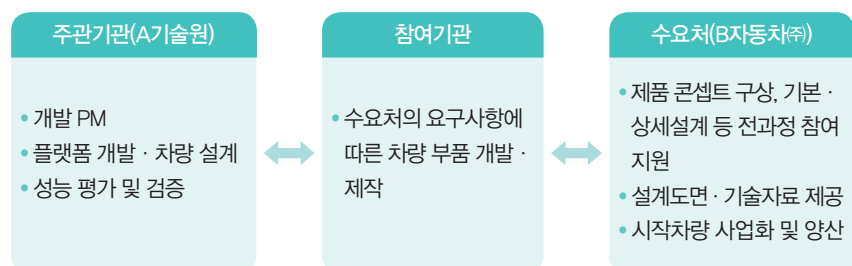
신청 배경

재단법인 A기술원은 국비지원 차량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수요처인 B자동차(주)로부터 상용차 기본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아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추진

* C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 그런데 A기술원이 2019년 1월 개발차량 설계용역 계약(2건, 총계약금액 5.7억 원)을 발주하기 위해 B자동차(주)에 설계업체 추천을 요청하자
- B자동차(주)는 유사과제 개발 경험, 기술자료 보안 유지 등을 사유로 D설계업체 1개만을 추천

〈수행기관 주요 업무〉



신청 요지

- A기술원이 ‘유사과제 개발 경험’ 등을 사유로 B자동차(주)가 추천한 D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검토 결과 및 의견

- 이 건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상용차(트럭)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군겸용 다목적 전술차량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상용차를 생산하는 수요처로부터 설계도면 및 기술 지원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데,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국내 트럭 생산업체 중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B자동차(주) 유일
 - 또한 수요처인 B자동차(주)는 설계도면·기술자료 제공, 부품 개발·제작, 평가 등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기술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주관기관, 수요처, 설계용역 업체 간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음
 - B자동차(주)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지 못하면 위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B자동차(주)가 유사과제 개발 경험·기술보안 유지 등을 사유로 D설계업체만을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됨
- ◆ 이 건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따른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이 필요한 설계용역계약”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기술원은 D설계업체와 2건의 개발 차량 설계용역을 수의계약(5.7억 원)하고 B자동차(주) 등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차량 개발을 완료(총사업비 126억 원 집행)
- 정책지정 방식의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사례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부는 2008년 B부로부터 농지 570ha를 특화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요청 받고 이에 동의

- 이후 2012~2018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B부로부터 특구 변경지정 협의를 요청받아 사업자 변경·사업기간 연장(2012년 → 2019년) 및 연구시설 설치 등에 동의*

* 단, 2019년까지 특구 북측 부지에 공사 미착수 지역이 있는 경우 남측 부지(190.8ha)를 특구에서 제외토록 “동의조건”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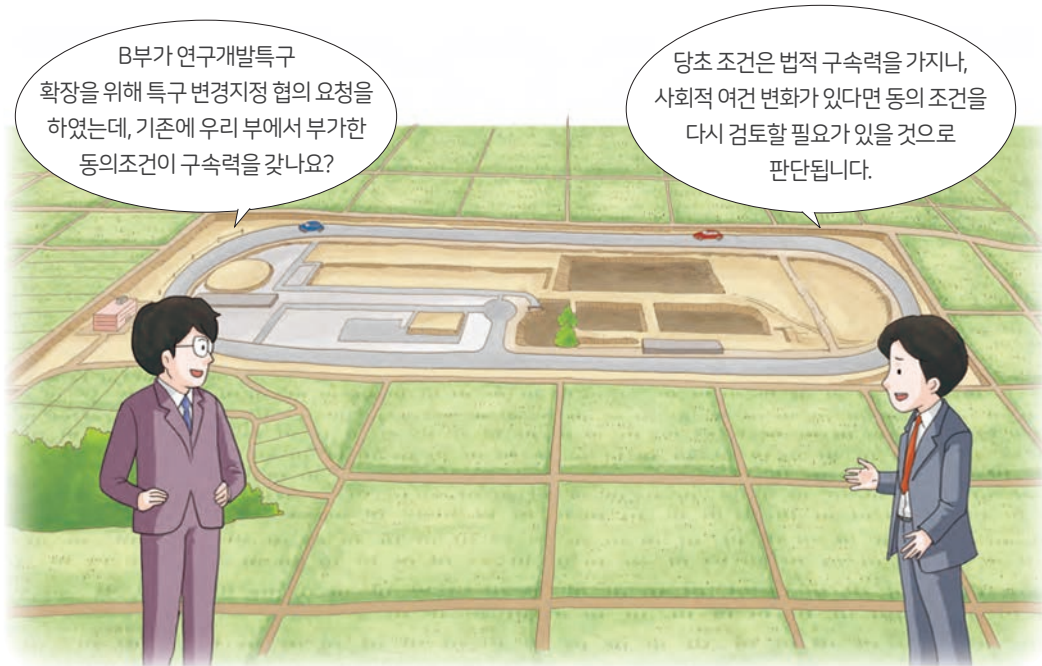
- 그런데 B부는 2019년 3월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사유로 북측 부지에 공사 미착수 지역이 있는데도 A부에 인근 농지(30ha)를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하고 연구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특구 변경지정 협의를 요청

신청 요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11조 등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 시 A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을 의제 처리한 경우, 협의 시 A부장관이 부가한 동의 조건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 검토 결과 및 의견

- 지역특구법 제11조, 제64조 및 제65조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개별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의제 처리를 통해 승인되는 개별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개별 법령의 소관 행정기관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구 변경지정을 위해 A부장관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은 단순히 A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 의제 처리로 승인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 권한을 가진 A부장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고
 - A부장관이 이에 대해 조건을 부가하여 동의한 경우 이는 의제 처리로 승인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 조건을 부가한 것과 같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 ▶ A부장관이 지역특구법에 따른 의제 협의 시 조건을 부가하여 동의한 경우, 이는 의제 처리로 승인 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 조건을 부가한 것과 같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

다만, 이 건의 경우 2019년 3월 B부장관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특구 계획 변경을 위해 A부장관에게 의제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A부는 변경된 특구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전용 하려는 농지 면적의 적정성, 농지의 보전 필요성과 같은 인허가 요건, 기준 부합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행 결과 및 효과

- A부는 국가 농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 특구의 첨단 농업바이오 단지 모델 제시 및 사업기간 내 준공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 완료
- 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인 직선주행시험로(길이 4.75km) 조성계획 확정, 2016년 준공된 자동차 주행시험장(151km²)과 함께 자동차부품·조립·연구 기능을 갖춘 특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민간투자 촉진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사례

5

산업단지 내 공동운영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2017년 3월~2018년 6월 B산업단지에 입점한 8개 집단급식소*에 대해 설치신고를 수리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0명 미만의 산업체는 공동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

- 그런데 B산업단지 내 일반식당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식당은 해당시설 지원 및 복지후생을 위한 부대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종사자만 사용 가능한데도 집단급식소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
- A시 도시공사에서는 2018년 6~12월 위 집단급식소들에 대해 3차례 시정 조치한 후 2019년 4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

[표] 「식품위생법」 및 산업집적법 비교

구분	「식품위생법」	산업집적법
명칭	집단급식소	식당
내용	(원칙) 해당 시설의 종사자만이 사용 가능 (예외)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으로 운영 가능	해당 시설의 종사자만 사용 가능

신청 요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88조(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검토 결과 및 의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고관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내어주도록 규정
- 영업허가와 달리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수리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설치·운영 신고증을 내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
 - ※ 판례 역시 관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
- 「식품위생법」과 산업집적법은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필요에 따라 공동운영 집단급식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시는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행 결과 및 효과

- A시는 집단급식소 신고수리에 대한 보류조치를 중단하고 산업단지 내 소규모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수리할 계획
 - ※ 컨설팅 과정에서 신고수리에 장애 요인이었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 대한 소관 부처의 개정 계획을 확인,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중
- 개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업체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

사례

6

납품된 물품의 하자 발생 시 자발적 리콜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공사는 2016년 11월~2018년 11월 24개 업체와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455만여 대를 납품받는 계약 체결

- 위 업체 중 10개 업체가 납품한 150만여 대(현장 설치 125만여 대)에서 “내장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설치 후 25개월 차부터 검침시각을 착오 전송하는 결함 발생
-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계약특수조건, 이하 “리콜업무기준”) 6. “리콜대상 및 범위”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리·교체·환급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
- 기설치된 저압전자식 전력량계를 수리·교체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여 위 10개 업체는 “통신중계장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리콜 제안

신청 요지

- A공사에서 납품받아 설치한 저압전자식 전력량계의 하자에 대해 리콜업무 처리 시 전력량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통신중계장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



▣ 검토 결과 및 의견

- 리콜업무기준 6. “리콜대상 및 범위”에 따르면 리콜범위는 공급자가 리콜 원인이 발생한 로트(생산 단위)를 수거, 파기 및 수리, 교체, 환급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량기자재 및 고장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약정
- 따라서 A공사는 하자가 발생한 전력량계를 수거, 파기 또는 수리, 교체, 환급의 방법으로 리콜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① 리콜업무기준 6. “리콜대상 및 범위”에 따라 하자원인 조사 결과 다른 방법에 의한 리콜조치를 통해 대단위 하자를 해소할 수도 있는 경우 리콜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② 이 건 하자의 원인이 하드웨어가 아닌 내장된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며, ③ 현장에 설치된 전력량계 125만여 대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할 경우 비용(최소 700억여 원, 최대 1,000억여 원)과 처리기간(최소 48개월, 최대 130개월)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통신중계장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리콜할 경우 비용(약 62억여 원)과 처리기간(6개월) 최소화 가능

- A공사는 하자 발생에 따른 리콜업무를 처리할 때 대단위 하자 발생 및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리콜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 경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리콜 처리 가능
 - 다만,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리콜방법을 결정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공사는 저압전자식 전력량계의 하자 발생에 대해 “부품 수리 또는 교체 방식”이 아닌 “통신중계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리콜 처리하여 2020년 3월까지 완료 예정(40% 완료)
- 불필요한 교체비용 700~1,000억 원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최대 130개월 → 6개월)함으로써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업체의 부담 경감

사례

7 사용폐지 도로 내 마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군은 신도로나 개설됨에 따라 구도로(1.42km)에 자전거도로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한 후 2016년 9월 도로사용을 폐지

- 그러자 B업체는 위 사용폐지 구도로에서 관광마차사업을 수행하고자 2019년 1월 A군에 협의 요청

신청 요지

- 인허가 관련 규정이 부재한 마차사업에 대해 도로시설물 사용협의서(사법상 계약)를 작성하여 민원인이 마차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관광진흥법」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3조(보행권의 보장)

검토 결과 및 의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쾌적한 보행환경 및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야 함
- 사용폐지된 도로 및 마차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차에 해당하고 위 도로에서의 마차 운행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일반사용에 해당하여 관련 인허가 규정은 부재
 - 한편 위 도로 내 탐방로에서 마차를 운행할 경우 마차가 인도를 통행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결국 보행자를 회피하는 운행이 불가피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신체피해 위험이 있고, 환경문제(악취 등) 등으로 보행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A군이 이 건 마차사업자로 하여금 선량한 사업자로서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협의(사용협의서 작성)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음
 - 다만, A군은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와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예방 대책(도로 사용 기간, 안전배상책임, 운행금지 기준 등)을 협의서에 반영하고, 협의서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군은 마차사업자와 안전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체결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하계휴가 기간 중 1천 명의 관광객이 관광마차를 이용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2

국민 권익보호 및 불편 해소

사회가 다원화함에 따라 개개인의 욕구 및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적극적 문제해결자로서 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민원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정책 수단으로 풀리지 않는 다양한 양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
- ② 유치원 시설 임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③ 농경지 대부·매각에 관한 사항
- ④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사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부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살처분 및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에 해당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발병 이후 가축 가격이 급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I·구제역과 달리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신청 요지

- 피해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을 개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AI·구제역과 같이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되
- 고시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전염병이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보다 살처분 당일의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살처분 당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제20조(살처분 명령) 및 제48조(보상금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및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검토 결과 및 의견

- 살처분 보상금액은 전염병의 확산 정도, 당해 연도 살처분 가축의 마릿수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 건 피해 농가에 대한 시혜적 입법조치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수익적 내용의 소급 개정은 제도 도입 취지,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
 - 발병 사례가 많았던 SI·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국내 최초 발병함에 따라 위 요령 보상금 지급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구제역·SI와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위 전염병들 간 보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살처분 시기에 따라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기존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어 소급적용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A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살처분이 이루어진 농가에 전염병 발생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개정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음

또한, 개정 규정 적용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게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경과규정 신설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부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진 농가에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기 및 인천지역 농가 234호에 785억 원의 살처분보상금 지급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사례

2

유치원 시설 임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공단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B유치원의 설립자가 2017년 7월 사망함에 따라

-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B유치원이 폐원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B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해당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8년 1월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B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2018년 11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 등을 활용하여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은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격 구비

- B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 A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

신청 요지

- A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교사 및 교지)을 학부모로 구성된 B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 가능요건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검토 결과 및 의견

-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임대차계약이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인지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주무부처인 C부는 임대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아를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 그리고 검토 당시인 2019년 1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 유일
 -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
- ➡ A공단은 학부모로 구성된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공단은 학부모로 구성된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10개 반, 262명 규모)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아 모집 시기에 맞춰 개원인가 완료
-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사회 내 혼란 방지에 기여

3 사례 농경지 대부·매각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도 소유 농경지(간척지·폐천부지)의 관리주체인 B시는 2006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1만 m² 초과 농경지의 대부는 일반입찰에 의해야 하는 데도 기존 경작농민들에게 1만 m² 초과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 이후 2017년 12월부터는 대부방식을 변경하여 대부 기간이 만료한 농경지 (1.1만 m²) 1건에 대해 일반입찰 실시
- 일반입찰 실시 결과 타 지역주민이 낙찰을 받게 되자 기존 대부농민들(대부 면적 74만 m²)이 일반입찰 유예 및 분할 후 수의 대부·매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
-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1만 m² 초과 농경지의 대부만기 시점이 도래

신청 요지

- ① 대부 농경지의 토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 예정인 1만 m² 초과 농지의 대부계약을 202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
- ②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에 맞게 분할·합병한 후 대부·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부터 대부받아 경작해 온 농경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A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제4호(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㉔ 검토 결과 및 의견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1만 m^2 이하 농경지만이 수의 대부의 대상이 되므로 대부 기간이 도래한 농경지의 경우 1만 m^2 를 초과하여 수의 대부 대상이 아님
 -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농경지의 분할·합병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지적 현황에 따른 분할·합병 및 대부·매각은 가능
 - 다만, 단지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과 달리 분할하거나 연접한 농경지(1만 m^2 초과)를 동일인에게 수의 대부·매각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 특례(부칙 제4호)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 전부터 농경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작한 자에게는 수의계약 제한 사유(1만 m^2 초과)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수의매각이 가능
 - 따라서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1만 m^2 초과 농경지도 수의매각 가능
- 1만 m^2 초과 농경지의 대부 기간을 수의계약으로 갱신하는 것은 불가, 지적 현황을 고려한 농경지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은 가능, 특례 규정의 요건 충족 시 1만 m^2 를 초과하는 농경지의 수의 매각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B시는 2019년 3월 해당 농경지의 지적 현황 및 농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적 현황에 맞게 농경지를 분할·합병한 후 대부·매각하는 내용의 “대부·매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적 현황에 맞게 농경지를 분할·합병한 후 1만 m^2 이하 토지 등 53,557 m^2 (10필지)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1만 m^2 초과 토지 중 대부 희망자가 2인 이상인 20,391 m^2 (3필지)는 지명경쟁 입찰로 대부하였으며
-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14,856 m^2 (3필지)는 기존 경작자에게 수의 매각하는 등 기존 경작 농민들이 합법적으로 약 10만 m^2 의 토지를 대부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원 해소에 기여

사례

4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위원회는 2018년 10월 공익신고를 할 때 신고인 대신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 변호사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시행 이후 6개월간 제도 이용이 부진(4건)한 것으로 분석
-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이하 “대리신고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신고 상담 및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고 “대리신고 변호사단”에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



신청 요지

- A위원회가 신고인을 대신하여 상담 및 대리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신고 변호사단”을 구성·위촉하여 운영할 경우 수입료(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검토 결과 및 의견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제도로써
-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해지므로 예산부담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공익제보에 관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 중
- ▶ A위원회가 신고인을 대신하여 상담 및 대리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대리신고 변호사단)에게 수입료(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지급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위원회는 2019년 5월 “대리신고 변호사단” 변호사에게 수입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3

국민 안전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최근 보건·환경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컨설팅 신청기관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원인자 불명 불법투기 폐기물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 ③ 전망시설의 법적 성격 및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에 관한 사항

1

사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부는 2019년 1월과 2월 B社로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안구질환 의약품을 같은 해 8월부터 공급중단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음

- 이에 2019년 8월 중 공급중단이 예정된 위 의약품의 대체약제인 C社의 의약품 (수출용)을 퇴장방지의약품* (약가 상한금액)지정기준선)으로 지정하여 국내 생산·공급을 유도할 계획 수립

* 퇴장방지의약품: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신청 요지

- B社의 의약품 공급중단이 예정된 상태에서 기존 약제와 동일한 제제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C社가 자사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상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로 보아 약가 상한금액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할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제8조 제2항 제11호 및 [별표 5]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



㉠ 검토 결과 및 의견

- C사가 자사 의약품을 약가 상한금액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지정기준 요건인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B社は 8월경 국내시장에서 철수 예정이라는 점, B社の약품은 국내 유일한 의약품으로서 대체약제가 없어 공급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
 - B社 의약품과 동일한 제제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국내업체는 C社가 유일하다는 점

– 업체 수 산정 시 적용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5] 2-라-(1) 규정의 단서 조항인 “단, 업체 수 산출 시 전년도 청구액이 100만 원 미만인 약제는 제외함”은 신규 공급 예정 업체가 기존 업체를 대신하여 동일한 제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른 동일한 제제 내 업체는 C社가 유일한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 C社가 동일한 제제 내 유일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약가 상한금액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C社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비하여 2019년 5월 C社의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7월부터 현재까지 병원 등에 공급(7~9월 총 1,307명)
- 합리적인 조건으로 필수 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2 사례 원인자 불명 불법투기 폐기물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 A부는 2019년 중 불법투기 폐기물을 전량처리하기 위해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중 기처리된 4.2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28.8만 톤에 대한 신속처리 방안 마련

신청 요지

- 폐기물 불법투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상권 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검토 결과 및 의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조례에 따라 청결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폐기물이 불법투기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비용을 강제징수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폐기물이 불법투기된 토지소유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토지소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피해자라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불법폐기물 투기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
- A부는 불법투기 원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불법투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우선 직접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불법투기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비용 회수 방안 마련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부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책임이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예산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2020년 1월 말 현재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중 23,4만 톤(71%) 처리 완료
- 불법투기 피해자인 토지소유주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지원

사례

3 전망시설의 법적 성격 및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지 내 전망시설 설치 추진

- A시는 위 전망시설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구조물로 판단하여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 B도는 위 전망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고 주장



신청 요지

- A시가 설치를 추진 중인 전망시설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구조물 인지와 자연녹지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외의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형공작물에 대해서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건 전망시설은 최상부 전망데크 및 전망데크로 이동하기 위한 데크경사로로 이루어진 시설(높이 49m, 총중량 451톤)로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하므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해당하고, 눈·비를 차단하기 위한 지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지자체도 유사관망시설을 공작물로 설치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건축물이 아닌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 자연녹지지역에는 4층 이하의 공작물만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 제한

- 이 건 전망시설은 토지에 정착된 12층 상당의 철골구조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보여지고

– 공작물로 설치 시, 다중이용시설이고 높이가 49m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별도대책 마련이 필요,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설치 제한

이행 결과 및 효과

- A시는 위 전망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공작물로 설치·추진하는 등 공원조성사업(총사업비 122억 원) 추진
- 공작물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어 안전사고 발생 예방

4

업무 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 제고

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 처리 전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사전에 직접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일선 집행현장의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적극 행정을 주저하던 공직자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운영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에 관한 사항
- ② 일반재산 매각·양여 특약등기에 관한 사항
- ③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기존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에 관한 사항
- ④ 재공고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⑤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민간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1 사례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부는 그간 관할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모성 물품을 구매해온 방식에 비효율 (출장에 따른 업무부담, 취급품목 제한, 유통비용 발생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

- 이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오프라인매장이 아닌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고민
- 그러나 전체 기관의 소모성 물품구매에 지출되는 1년 예산(관서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이 상당 규모여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구매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 하기에는 사후 감사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소모성 물품구매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은 관서운영경비이므로, 관서 운영경비 지출 시 온라인 구매방식을 활용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신청 요지

-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검토 결과 및 의견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터넷사이버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 중
- 따라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사이버몰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 인터넷사이버몰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부는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관련 지침 시달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188명이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일반수용비 1,861억 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공무원의 불편 해소

2 일반재산 매각·양여 특약등기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광역시 B구청은 A광역시로부터 노후 건물을 이전받아 철거한 후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18년 9월 이전받는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매각^{*}을, 건물은 무상 양여^{**}를 요청

^{*}매각: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양여: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 그러나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필수 절차인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하고, 양여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양여 재산의 실체가 소멸되므로 특약등기에 따라 건물 양여계약이 해제되는 문제 발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필요시 일반재산 양여 가능, 단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 절차 필수

- 이에 A광역시는 토지와 건물이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매각 시 특약등기할 경우 건물 매각 혹은 양여 시에도 특약등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

신청 요지

- A광역시가 B구청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만 공공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면서 용도 외 사용 시 매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특약등기를 하고, “건물”은 특약등기 없이 매각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양여),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검토 결과 및 의견

- “매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일반재산 매각 시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는 특약등기가 필수
 - 그러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약등기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물을 특약등기 없이 매각하는 것은 가능
- 한편, 용도를 정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매각”과는 달리 “양여”의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는 필수 절차에 해당
- 따라서 기존 건물을 특약등기 없이 양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므로 불가능

▶ A광역시 소유 토지를 주민센터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특약등기하여 매각할 경우, 동 토지상의 건물을 특약등기 없이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약등기 없이 양여하는 것은 불가

이행 결과 및 효과

- B구청은 A광역시로부터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에 착공
- 낡고 협소한 주민센터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사례

3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기존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9월 B사와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14억 원) 등을 체결한 후 2018년 8월 기본설계(안)에 대해 C부와 사전협의 진행

- 그런데 C부와의 사전협의 지연으로 2017년 말 사고이월한 위 사업예산의 출납 폐쇄기한이 도래하자 A시는 2018년 12월 기시행 부분에 대해 12.5억 원을 지급하고 위 용역계약을 해지
- 이후 2019년에 재해예방사업의 연속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존 계약 상대자와 재계약 추진



신청 요지

- 출납폐쇄기한 도래로 설계용역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잔여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검토 결과 및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예산의 불용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당초 A시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고
 - － 이 건 예산 불용이라는 A시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종전 잔여계약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할 경우 잔여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입찰 등으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지고 전차용역 검토비용 등 사업비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등 A시가 얻을 이익은 크지 않음

-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와 수의로 재계약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A시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잔여과업에 대해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상대자와 수의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행 결과 및 효과

- A시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가격 및 그 밖의 조건 변경 없이 B社와 수의계약을 체결
- 설계용역의 연속성 있는 과업수행 및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사례

4

재공고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공사는 2개 건설사업(B사업, C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 실시

- 그런데 B사업의 경우 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여가 가능한 2개 업체 중 D社만 응찰하고 실적평가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 E社는 입찰 참여를 포기
- C사업의 경우에도 최초 입찰 후 2회에 걸쳐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F社 1개 업체만 응찰하여 모두 유찰 처리

신청 요지

-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및 제8조(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3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 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검토 결과 및 의견

- A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B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D社로부터 1인 견적을 받거나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E社로부터도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 가능
- C사업의 경우 2회의 재공고 입찰에도 F社 외에는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타 업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F社로부터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 A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1인 견적을 받거나, 이 건 입찰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사업의 긴급성, 계약의 공정성, 입찰참가 자격, 사업비(예정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찰참가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전 별도 확인이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공사는 D社 및 F社와 1인 견적에 의해 각각 수의계약 체결
- 재공고 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등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

사례

5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신고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되는 경우 빈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소송과 국가소송(민사)에 한하여 수임료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하 “직무관련 사건”)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부재



신청 요지

-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소·고발 및 소송 등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 등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검토 결과 및 의견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소·고발 및 소송 등 직무관련사건에 대해 국가의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A위원회는 직무관련사건에 대해 지원 범위·대상 등을 규율하는 훈령 등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의 지원 가능
 - 다만, 사전에 고의·과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 변호사 수임료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위원회는 민원인·신고자 등에 의해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지침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

사례

6

민간지원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B공단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을 유치·집적화하기 위해 “C민간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 그런데 A도는 2018년 10월 민자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자 2019년 5월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 검토

신청 요지

- 관련 업체들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위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재산의 성격을 행정재산 혹은 일반재산 중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검토 결과 및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공용재산 등의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
- 그런데 이 건 B공단 관련 민간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시설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위 센터는 사경제 주체로서 운영하여야 하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공용재산)한다거나 기업용으로 사용(기업용재산)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 민간 사용을 전제로 조성하는 시설이므로 대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위탁개발 시)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조성목적에 부합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용방법	사용 · 수익허가	대부계약	임대차계약
최대사용 기간	10년 (5년, 1회 갱신 가능)	10년 (5년, 1회 갱신 가능)	제한 없음 (5년, 갱신 제한 없음)
사용·임대료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주변 시세 반영

- C민간지원센터는 A도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민간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산에 해당

이행 결과 및 효과

- A도는 민간기관 집적화를 위한 C민간지원센터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지원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투융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지원센터 개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업무처리 지원

5

기관 간 이견 조정

행정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민간 혹은 행정기관 간 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계기관 간 법 해석·적용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감사원은 여러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컨설팅을 통해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균형감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견 대립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비효율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 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관한 사항
- ②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③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1

사례

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2015년 12월 C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중학교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 C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지구에 위치한 A시 사유지를 중학교 학교용지(면적 1.5만 m²)로 확보하고, B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협의
- 그런데 A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B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20%를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으로 각각 주장하는 등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기관 간 이견 발생

※ 감정평가액: 210억 원, 조성원가의 20%: 76억 원

신청 요지

- 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공급으로 학교용지 수요가 발생하여 A시의 사유지에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급가액(감정평가액)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공급가액(조성원가의 20%) 중 무엇을 학교용지 공급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관련 법령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및 부칙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9743호, 2009. 5. 28.〉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및 제16조(준공검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검토 결과 및 의견

- 학교용지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등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 2006. 7. 19.부터 2009. 5. 28. 사이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2009. 5. 28.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2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
- 그런데 이 건 C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추가 수요인 위 학교용지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 2019년 5월 기준 C택지개발사업은 총 6단계 중 5단계 사업까지 준공된 상태로,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단계가 아닌 일부 단계가 준공검사를 거친 경우라도 해당 단계의 개발사업은 완료된 것이어서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관리 대상으로서 실시계획의 변경 또한 불가능
- 따라서 위 학교용지는 C택지개발지구 1단계 준공(2011년 12월)으로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없어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 시유지(일반재산)로서 그 공급가액은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이 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이행 결과 및 효과

- A시는 감정평가액으로 이 건 시유지를 평가하여 B교육지원청 소유의 토지와 교환을 추진 중
- 개발사업 준공지구 내에 확보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 간 이견 해소 및 학교설치사업 신속 추진에 기여

사례

2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공사는 택지개발 중인 C도시 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설치비용 2,209억 원, 지하화)을 추진하면서

- 2016년 9월 효율성 제고를 위해 B시에서 설치를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 설치하기로 하고 2019년 4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
- A공사는 B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국고보조금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308억 원과 주민 지원사업비 400억 원 계 1,708억 원을 납부하고 B시에서 C도시 외곽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방안 마련
- 이를 통해 A공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B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소지를 예방할 수 있어 두 기관 모두 위 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A공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 B시는 A공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유사 설치사례 단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해야만 통합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신청 요지

- ① A공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 ② 주민지원사업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③ 유사 설치사례의 설치비용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지침)

④ 검토 결과 및 의견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비용은 시설 부지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비용에 주민지원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음
 -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등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주민지원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폐기물 수수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 ②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건설사업과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③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B시는 조례로 톤당 단가의 산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 국고보조금지침상 표준단가는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와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한 지침일 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에 대한 지침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준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 설치사례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음
- ➡ ① A공사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고, ② 법적 의무가 없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할 수는 없으며, ③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톤당 단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사 설치사례의 설치비용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 가능(다만, 이 경우 적절한 유사 설치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단가 산정이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공사와 B시는 사업자의 비용부담 범위와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설치를 협의 중
- 기존 설치비 1,708억여 원에서 48억 원이 절감된 1,660억 원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군은 2004년 문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3월부터 B작가에게 집필·주거 용도의 건물(이하 “집필실”)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음

- 그런데 A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2018년 2월 B작가에게 사용료 1,800만 원 (5년분)을 부과하였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

신청 요지

- ① 향후 B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 ②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검토 결과 및 의견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지자체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수익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면제·감면 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 징수 가능
-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의 목적·성질을 고려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이 건 조례 등에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음
 - 다만, 문학공원 조성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A군이 조례로 그 내용·범위 등을 정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

➡ A군은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이행 결과 및 효과

- A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수익계약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한 후 B작가에 대해 수익로 집필실 사용허가를 한 후 사용료 징수

6

업무처리 기준 제시

그간 접수된 사전컨설팅사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량에 관한 사안은 각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고, 기관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사안일지라도 기관 입장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자칫 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 ② 과징금 부과기업의 회생계획안 동의에 관한 사항
- ③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숙사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

1
사례

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공사는 2018년 10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가 C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의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협약 해지

- “사업협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A공사는 PFV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해지한 경우 해당 부지의 매매대금 356억 원을 PFV에 반환하고, 손해배상액 등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A공사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액(105억 원)과 개발이익환원금(218억 원)을 매매대금 반환금액에서 유보(계 323억 원)하기로 PFV에 통보
- 그런데 PFV는 2018년 12월 개발이익환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개발 이익환원금을 유보액에서 제외하는 대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매매대금 반환금액에서 유보하는 안을 제안



신청 요지

- C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A공사가 토지소유권 이전(매매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을 PFV와 협의하면서 개발이익환원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련 법령

- 「C혁신도시 공모지침서」 제17조(개발이익의 사용계획)
- 「사업협약서」 제18조(사업의 성실이행), 제19조(협약의 해지) 및 제20조(손해배상)
- 「용지매매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제)

검토 결과 및 의견

- 이 건 사업기간 동안 PFV에 발생한 총당기순이익은 176억 원으로서 목표이익에 미달하고 개발이익 환원금은 발생하지 않음
- A공사가 개발이익환원금을 PFV에 요구하여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 당초 공사와 PFV가 합의한 금액(105억 원)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A공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FV와 토지소유권 이전, 손해배상액 및 개발이익 환원금의 제외 여부 등에 대해 합의 가능
 - 다만, 공사는 PFV의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이익환원금의 발생 여부를 재확인한 후 최종 합의 여부 결정 필요
- A공사는 협약 해지에 따른 개발이익환원금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보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PFV와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PFV가 얻은 개발이익 금액 등을 위 공사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처리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공사는 개발이익환원금 제외 조건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금 등에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PFV와 합의 완료
- 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의 원만한 협약 해지를 통해 신속한 사업 재개에 기여

2 사례

과징금 부과기업의 회생계획안 동의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위원회는 B社에 대해 입찰담합 등을 이유로 2017년 3~4월에 걸쳐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 B社は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12월 A위원회 전부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년 1월부터 회생절차 진행 중

※ B社 회생채권(126억여 원) 중 과징금채권(116억여 원)이 약 92%를 차지

- B社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과징금 116억 원 중 93억 원(80%)은 면책하고, 남은 23억 원(20%)을 9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B社は 위 회생계획안에 대해 A위원회에 동의를 요청



신청 요지

- B社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부과된 과징금 중 80%가 면책되는데, A위원회가 위 회생계획안에 자체 결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7조(가결의 요건),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포함
- 과징금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책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 A위원회가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점, 청산가치 배당금(18억 7,400만 원)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금(18억 8,100만 원, 현재가치 환산금)이 높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고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면책 범위의 적정 여부, 과징금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및 채무기업이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상 국가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위원회는 관계인집회에서 B社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등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
- 파산 대신 기업회생을 유도하여 실직(직원 130명), 협력업체 도산 등 부정적 연쇄 효과를 사전에 방지

사례

3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부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이하 “프랜차이즈”*) 제도화를 위해 2018년 5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0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을 마련·배포

* 프랜차이즈: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

- 그런데 B대와 C대는 2018년부터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으나 현행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소급 인정하여 이들 외국 학생들에게도 국내 학위를 수여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



신청 요지

- B대와 C대가 운영기준에 따른 교육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대학에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도 이들 외국대학 학생에게 국내 학위를 수여 하도록 운영기준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A부 지침)

검토 결과 및 의견

- 위 운영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수익적인 내용의 소급 개정은 제도 도입 취지, 수혜자의 상황, 국민의 법감정, 사회 실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이 인정됨
-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대학 학생에게 국내 학위 불허 시 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에 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국내 학생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국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국내 학생의 우회입학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대학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됨
- 그러나 현행 운영기준상 외국대학의 학생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B대와 C대의 귀책 사유로 위 학생 구제 조치에 특혜 소지는 없는지 검토 필요

- ➔ A부는 운영기준에 학위 수여에 관한 소급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조치를 할지 여부는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 취지, 학생들의 피해 정도, 국가 신인도, 특혜 소지, 국내 학위 수여에 상당한 교육과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A부는 2019년 10월 외국대학 학생에게 국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개정
- 2019년 10월 첫 졸업식을 개최하여 총 202명의 외국대학 학생에게 국내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향후 재학생 1,694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확 실성 해소 및 국가 신인도 제고

사례

4

기숙사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2017년 11월 B社에 대해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공장 용지)에 공장시설·공장부대시설(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 B社는 2017년 11월 기숙사를 ‘해당 건물의 공장시설을 분양받는 자’에 한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신고를 하고도
- 이후 B社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음을 사유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종업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시설을 분양받은 자”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



신청 요지

- 기숙사를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호별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검토 결과 및 의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숙사를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그러나 이 건 기숙사의 개별 호실은 구조상 구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할 수 없음
- ❖ 「건축법」 등에 따르면 이 건 기숙사의 개별 호실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A시는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없음

이행 결과 및 효과

- A시는 B社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기숙사 용도에 부합하게 건축물 대장 작성
-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숙사의 불법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건축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로 점차 확산되어 현재 총 61개 기관이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체감사 대상기관(부서)은 관련 법령·유권 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자체감사기구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례집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간 여러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사례를 공유하고자 주요 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합한 사례를 인허가, 토지·개발, 공사·계약 등 업무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업무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업무유형	주요 사례
인허가	-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토지·개발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	-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공사착수일 산정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공사 중복구간 내 공사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 타 지자체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 사업장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인허가

1 사례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시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조합(사회적기업)은 B시 도시공원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

- 그런데 B시 녹지에너지과는 A조합이 발전소 설치를 통해 전기생산, 판매, 잉여금 배당을 하는 등 조합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공원 내 영리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
- B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상 목적인 ‘공공의 복리 증진’을 이유로 ‘영리목적’ 시설은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자 상급 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조합이 도시공원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시설이 '영리목적' 시설에 해당하면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검토 결과 및 의견

- 도시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기준(도시공원의 미관 및 기능, 점용 목적물의 구조안전, 내구성 확보 등)과 대상별 세부 기준을 규정
- 세부 기준에 영리 목적이나 수익발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만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영리 목적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법에 규정된 모든 허가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사무소·축사·골프장 등도 기준에 맞으면 허가 가능
- 따라서 점용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의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공복리’ 등 추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태양광발전시설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요건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리 목적 시설이라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행 결과 및 효과

- B시는 2018년 5월 접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점용허가 완료
-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인허가 상대방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2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광역시체육회는 A광역시 소유 체육관 내 승마장을 위탁 운영

-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승마장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하려는 자의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위 체육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관리주체인 B구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위 승마장을 영리 목적의 승마장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A광역시에 사전컨설팅감을 신청



신청 요지

-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사용료를 받을 경우 이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보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A광역시 B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검토 결과 및 의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
- A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승마장의 경우 이용료 징수에 따른 잉여금 발생 시 개·보수 비용 등으로 적립하고 있고, A광역시가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승마장을 A광역시체육회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공공체육시설인 위 시설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절차 불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 처리하는 등 A광역시체육회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도움 제공

토지·개발

1 사례

군계획시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시행자인 A업체는 시설 설치 공사 지연으로 준공예정일(2018년 3월)의 변경(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

- B군에서는 공사의 완료를 위해 A업체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2012년 3월)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므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군 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검토 결과 및 의견

- 군 계획시설을 사업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법령으로 정하는 연장 사유(천재지변, 소송 진행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는 행정청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누려온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 행정청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 사업 추진 의지, 법 위반 경위, 사업자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에 따른 이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

▶ 이 건 공사의 공정률은 60% 이상으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어 사업계획 취소 시 상대방이 받게 될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B군은 사업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한 후 2018년 4월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리
-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불이익을 예방하였고 군계획시설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례

2

초등학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시행자들은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의 용지확보·조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련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고, 위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

- 한편, 주택건설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의 토지소유자인 종중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 내부 문제로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망도 불투명
- 또한 대상 토지의 85%가 종중 소유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요건(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지 수용 방식도 불가
- 이에 B시는 사업자 등과 예산 등에 관해 협약한 후, 직접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수용 절차를 거쳐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방법의 적법성에 대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제안자 및 학교용지의 부담 주체인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86조(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및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검토 결과 및 의견

- 국토계획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관리계획(A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용지)의 시행자로 지정 가능
 - 그러나 위 규정은 입안 제안자만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님
 -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다른 주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학교용지를 직접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토지소유자(중증)와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학교용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

공사·계약

사례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구조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급자가 교체대상부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을 추진(5,000만 원 상당 절감 예상)

- 그런데 A구조단 계약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구매계약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재검토 요청
- 이에 A구조단은 표준재생수리부품과 고장 난 기존 부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항공기 부품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갑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구조단이 고장 난 기존 부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소방항공기 부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

검토 결과 및 의견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A구조단이 부품 매입 조건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한 것으로서 고장 난 기존 부품은 관련 업체에서 수리·재생 후 판매가 가능
-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가 현저하고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고장 난 부품을 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가져가도록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교체대상부품을 매입하는 조건을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소방항공기 부품 구매계약 체결 추진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A구조단은 고장 난 기존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의 교체대상부품 매입 조건부 부품구매계약(4,600만 원)을 체결하여 표준재생수리부품 구매계약(1억 700만 원) 및 교체대상부품 매각계약(1,000만 원)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에 비해 5,000만 원 상당의 예산 절감

2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공사착수일 산정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도는 관내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5월 B社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고, 11. 27.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여 12. 21.에 수리

※ 사업내용: 제2종 종합휴양업(면적 562,195㎡, 사업비 2,219억 원, 고용인원 622명)

- 그런데 A도는 기관 사정으로 2019. 1. 3. B社에게 공사착공 중지 요청을 통보 하였고 2. 14. 재착공 조치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통보, 이후 B社は 8월 A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
- 한편 「A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은 시설 사업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규정
- 이 때 시설공사 착공신고 수리일(2018. 12. 21.)을 공사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착공개시를 통보한 일자(2019. 2. 14.)를 공사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시설공사 착공신고 수리일(2018. 12. 21.) 이후 착공이 중지된 기간(2019. 1. 3.~2. 14., 43일)을 제외하고 6개월째 되는 날인 2019. 7. 31.을 신청 마감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 공사착수일 산정방식에 따라 B社の 신청 기간 경과 여부가 결정되는바, 적절한 산정방식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신청 요지

- 「A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공사착수일”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 「A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검토 결과 및 의견

- 「A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착수일'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착수일'의 일반적 해석례에 따르면 '공사를 시작한 날'이라는 의미로 착공 신고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함
- 공사 착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 따라서 실제 착공일을 확인하여 그날로부터 신청 기간(6개월)이 도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조례의 '공사착수일'은 '실제 착공일'로 산정하여 B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기간 내 신청 절차를 완료하였는지 판단할 필요

이행 결과 및 효과

- 투자자는 A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여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19. 10. 7. 지정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지정 시 향후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 기간 산정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업무처리에 도움 제공

사례

3 상하수도공사 중복구간 내 공사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관내 농어촌 생활용수(상수도) 개발사업 및 하수관로(하수도) 정비사업 실시

구 분	생활용수(상수도) 개발사업	하수관로(하수도) 정비사업
발주기관	市 상하수도과	한국환경공단(市 위탁)
규모	상수도관 L = 21.4km	하수도관 L = 15.16km
사업비	총 82억 4,700만 원	총 162억 6,500만 원
사업기간	2018. 4. ~ 2020. 12.	2019. 8. ~ 2021. 12.

- 위 공사위치는 상·하수도 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으로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 방지, 하자책임 명확화 등을 위해 발주기관 일원화* 필요

* (현재 이원화) 市상하수도과(상수도) / 한국환경공단(하수도)

- 상수도공사를 하수도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시공할 경우 공사비 약 13억여 원 절감 가능
- 그런데 하수도공사는 「하수도법」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상수도공사는 위탁가능 규정이 없는 상황
- 상·하수도공사 중복구간 내 예산절감 및 원활한 현장관리 등을 위해 상수도 공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발주기관을 일원화하고자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신청 요지

- 상·하수도공사 중복구간 내 예산절감 및 원활한 현장관리 등을 위해 상수도 공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장(종합계약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수도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시설의 설치(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가능 규정이 없음
- 다만, 상·하수도공사 중복에 따른 이중굴착, 예산낭비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의 단일화가 적합하므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종합계약* 방식을 비교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종합계약: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 기관(자치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공동계약 체결

구분	일괄 위탁 방식(1안) (신청부서 의견)	종합계약 방식(2안)	비고(기존 방식)
개요	1개 기관에서 일괄 위탁받아 단일공사로 발주	2개 기관이 공동계약, 단일공사로 발주	상수도/하수도공사 각각 발주
근거	상수도공사 위탁규정 없음	지방계약법 제28조	지방계약법령
감독 기관	〈일원화〉 • 상수도+하수도: 환경공단	〈이원화〉 • 상수도: 시청 • 하수도: 환경공단	〈이원화〉 • 상수도: 시청 • 하수도: 환경공단
공사비 (상수도)	33억 4,100만 원	33억 4,100만 원	46억 7,300만 원
장점	• 일괄 시공 공사비 절감(13억 원), 이중굴착 방지, 하자책임 명확 • 감독기관 일원화로 현장관리 용이	• 일괄 시공 공사비 절감 (13억 원), 이중굴착 방지, 하자책임 명확	—

➡ 상·하수도 중복구간은 종합계약 방식(2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이행 결과 및 효과

- A시는 현재 종합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상·하수도 단독 시공 (46억여 원)에 비해 13억여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

기타

사례

1 타 지자체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는 A군 주민들이 대형유통매장에 A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요구하자, 위 대형유통매장은 2017년 11월 A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

- A군은 「A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봉투판매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 대형유통매장이 타 지자체에 소재하여 A군의 관할 읍·면장이 없는 상황에서 봉투판매인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현 장





신청 요지

- 타 지자체에 소재한 대형유통매장에서 A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판매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Ⅲ-1-마.)

㉔ 검토 결과 및 의견

- 시장·군수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대형유통매장 등이 소재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관련 지자체는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A군은 인근 대형유통매장의 A군 봉투 판매인 신고를 처리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A군 관할 읍·면장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인신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이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A군에서 직접 타 지자체 소재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봉투 판매인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

이행 결과 및 효과

- 2018년 3월부터 인접 지자체에 소재한 대형유통매장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허용
-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접 지자체에 소재한 대형유통매장의 봉투판매인 신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

2

사업장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2018년 12월 A군 B정수장에서 여과지* 상층 삭취 및 신규 여과사** 보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여과사 65톤 발생

* 응집·침전 등 전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물질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시설

** 여과 장치에 쓰이는 모래

- 발생한 폐여과사는 공정 중 약품 주입이 없는 고품질 여과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2019년 6월 A군에서는 B정수장 전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모래진조상 설치 시 위 폐여과사를 전량 재활용하고자 하나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간(90일) 제한이 있는 상황
- 폐여과사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위탁처리비*이 별도로 발생

* 90일 이내 위탁처리 시 위탁처리비 및 추가 모래 구입비(2,600만 원)

-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보관 기간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기간(90일 초과)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검토 결과 및 의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의 경우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연장 승인이 가능
 - 폐여과사 성분 분석 결과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에 해당되며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을 승인함이 타당
 -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시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오염 여부, 주민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➊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한 장기간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활용 시점까지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승인이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을 인정함
- A군은 2019년 2월 폐여과사 보관 기간 연장 승인을 하였고, 2020년 1월 B정 수장 전처리시설 도입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폐여과사가 재활용될 예정에 있어 자원 낭비를 줄이는 한편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추가 모래구입비 예산 2,600만 원을 절약

사례

3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도 관내 일반숙박시설 건축주인 B시행사와 수분양자(382명) 간에 부동산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60일 이내 실거래신고를 완료

- 그런데 이후 시행사의 분양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인해 건축주(매도인)가 수탁자로 변경되어 부동산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에도 60일 이내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결과 발생
- 분양관리형 신탁과 같이 종전 신탁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고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외형상 매매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거래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 그런데 실거래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시 수분양자(382명)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업무처리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신청 요지

- 변경된 건축주(매도인)인 수탁자가 실거래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세회피나 부동산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이 아닌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8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 검토 결과 및 의견

- “실거래신고 후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매도인만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 최초 신고된 거래신고와 동일한 신고 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해석을 토대로 판단
- 최초 체결한 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60일 이내 완료되었고, 변경된 건축주와 다시 체결한 부동산 분양계약이 매수인(수분양자) 기준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거래이면서 매도인만 변경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이행 결과 및 효과

- 부동산실거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가능성 및 계약체결 경위 등을 확인하여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382명의 수분양자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실거래 신고사실에 대해 과실이 없는 수분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적극행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1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2. 연혁 및 운영 실적
3. 최근의 주요 개선 내용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 절차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제3절 면책 사례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2. 연혁 및 운영 실적
 3. 최근의 주요 개선 내용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소명제도'의 하나로,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감사소명제도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감사결과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함

－ 적극행정면책,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 소명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구분 및 접수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음

이 제도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한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법」 제34조의3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 절차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문책·주의요구 등 「감사원법」 등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이익한 처분요구’에는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주의요구 등이 있습니다.

2. 연혁 및 운영 실적

’09년 제도 도입.
’15년 법제화

감사원은 2009년 1월 당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15년 2월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감사원법」에 마련한 후 구체적인 면책 기준, 운영 절차 등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자체감사기구 감사의 경우에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 2월과 5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각각 시행 근거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2019년 8월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도 적극행정면책의 근거 규정이 포함

그리고 자체감사기구도 각각 자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적극행정면책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 연혁

- '09. 1월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14. 6. 2. 폐지) 제정
- '14. 6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15. 2. 3. 폐지) 제정
- '15. 2월 「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적극행정면책 규정 신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정
- '15. 5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제13조의4) 적극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규정 신설
- '18. 2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 발표
- '적극행정지원단' 신설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 '19. 2월 「적극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과제」 발표
- 기존의 면책 기준 개선 및 사전컨설팅 이행에 따른 면책 기준 신설
- '19.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

한편, 그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91건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사유로 면책하였습니다.

그중 136건은 감사원이 직권으로 면책한 것이고, 55건은 감사를 받은 공직자 등으로 부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검토 후 면책한 것입니다.

3. 최근의 주요 개선 내용

감사원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18. 2월) 및 「적극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과제」('19. 2월)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신설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감사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들로 이루어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8. 3월부터
면책 여부를
면책자문위에서
심의

이에 따라 2018년 3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 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1기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한 후 2019년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51건의 면책신청사항을 심의하였고, 2019년 3월부터는 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은 제2절에서 설명

2) 현장면책 활성화 방안 마련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현장에서 조기에 면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실시감사 기간 중에 대상기관의 면책요청을 받아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단장이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현장면책’의 세부 기준·절차를 2018년 3월에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현장면책 신청 절차·방법은 제2절에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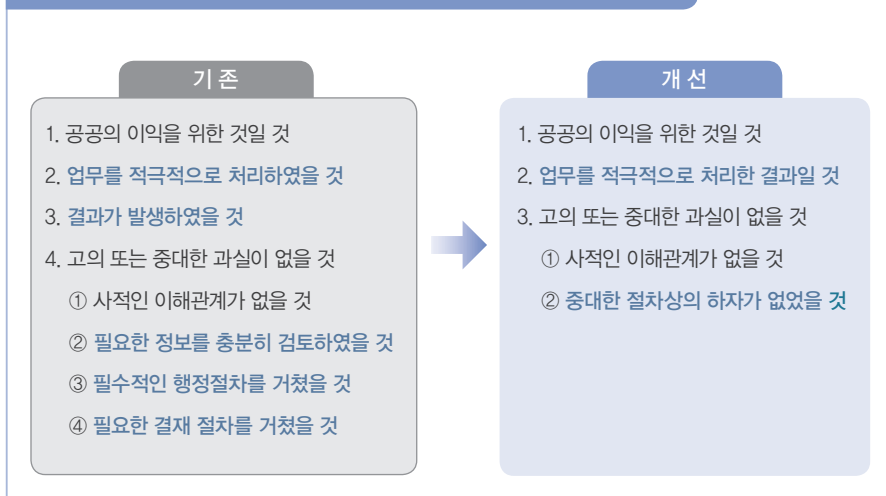
3) 면책 기준 완화 및 컨설팅 이행 시 면책 기준 신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18년 12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18. 3월
현장면책 제도
도입

‘18. 12월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면책 기준 개정



또한, 2019년 1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사후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판단 기준

-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컨설팅을 받았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구체적인 적극행정면책 기준은 제2절에서 설명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 절차

-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1) 적극행정면책 기준

「감사원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그러므로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의 지적대상 행위가 공익성과 적극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사적인 이해관계 등)가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따라서 적극행정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준별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첫째,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한 업무 자체(☑ 관련 규정·사무분장상 업무, 지시사항 이행 등)가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방식(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위)의 의도 및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둘째, ‘업무의 적극적 처리’란 공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능동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했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추정하는 요건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①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는 감사 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직접 수혜의 대상이 되거나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가 연관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②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경미한 절차나 사소한 결재 과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상 중대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판단 기준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에서 시행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사후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책 검토 사안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안과 동일하지 않거나 사전컨설팅 의견과 달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검토 사안’과 ‘사전컨설팅 사안’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항은
사안이 동일하고,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면책
기준 충족

둘째, 사전컨설팅 신청기관·부서에서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 의견 도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중요 사실을 왜곡·은폐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충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판단 기준

- (사안의 동일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정보제공의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 (사적인 이해관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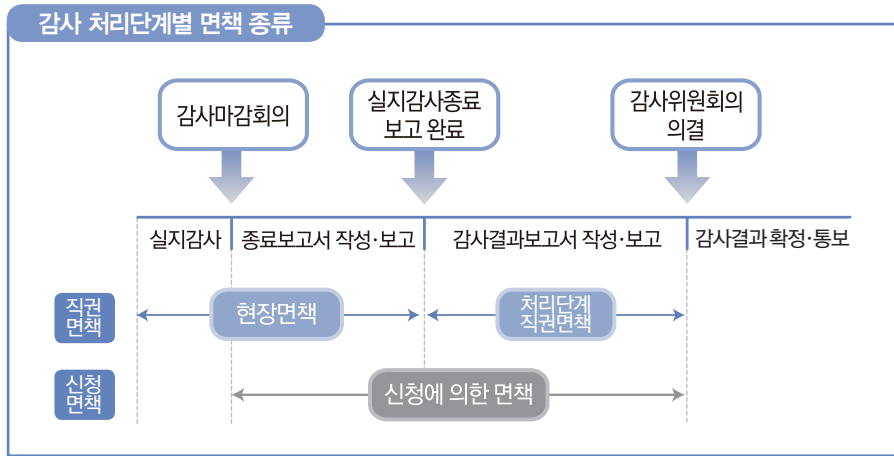
1)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이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은 면책신청 여부에 따라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과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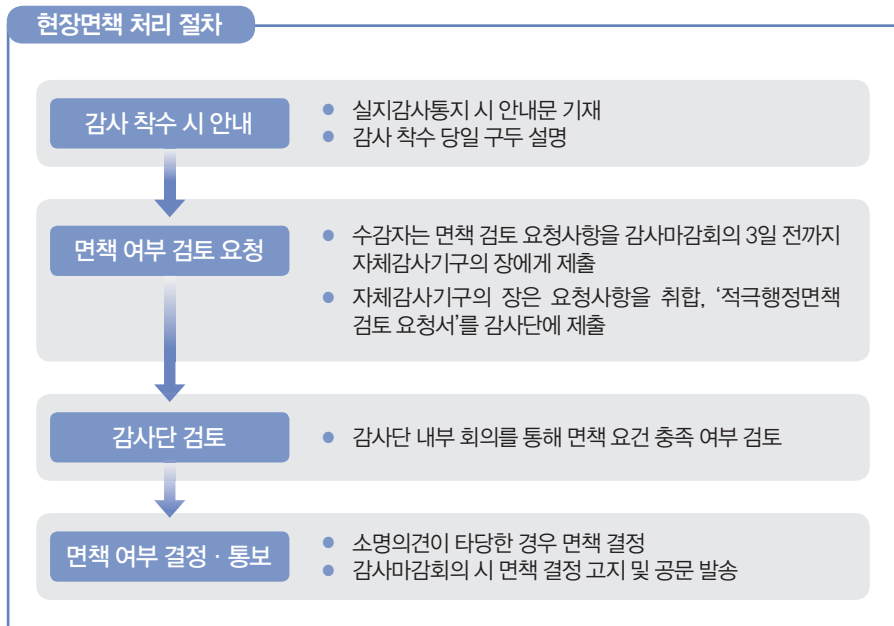
'현장면책'과
'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단계 직권면책'
으로 구분

또한 '직권면책'은 감사 실시·처리단계에 따라 감사 착수 후 감사 현장(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종료 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 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구분됩니다.



(1) 현장면책

먼저 실지감사 기간 중 현장면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 착수 시 안내)** 감사원은 감사 착수 전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고, 감사 착수 당일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현장면책’의 방법·절차 등을 구두로 설명합니다.

현장면책 방법 ·
절차를 감사 착수
시 안내

실지감사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면책 여부 검토 요청)**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행한 업무 중 감사 현장(실지감사)에서 감사자가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i) ‘감사자가 조사하는 사항의 요지’, ii) ‘적극행정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감사단장이 실지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처리방향 등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는 마감회의
3일 전까지
면책 검토 요청
사항을 자체 감사
기구의 장에게 제출

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출된 면책 검토 요청 사항을 취합하여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고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감사단에 제출합니다.([참고자료 2] “현장면책 검토 요청 서식” 참조)

③ **(감사단 검토)** 감사단장은 감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면책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별도 검토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적으로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항’도 현장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단은 면책 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④ **(면책 여부 결정·통보)** 감사단 내부 회의 결과 소명의견이 타당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어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 결정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면책 결정 사실을 공문으로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합니다.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면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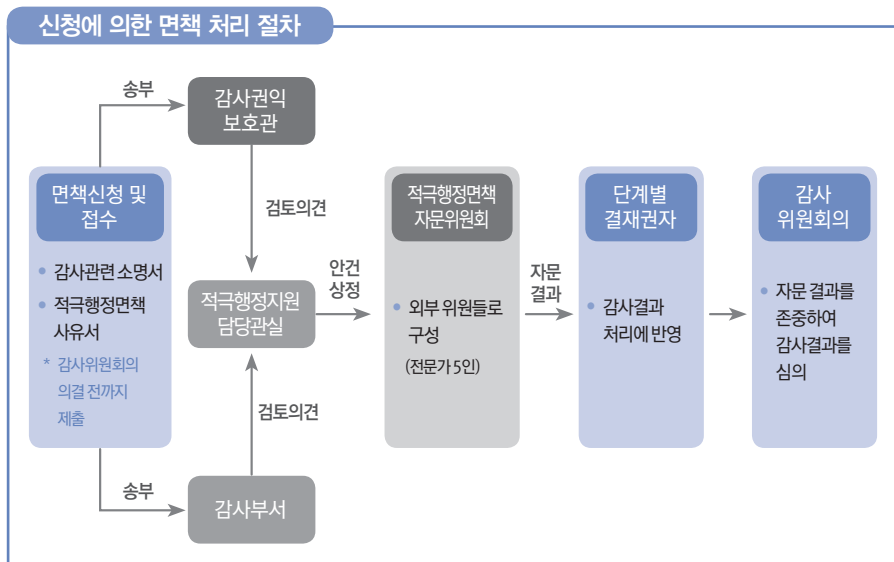
면책 결정 사실을
마감회의 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 여부를 계속 검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 즉시 감사를 받은 기관에 면책 결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가능(‘(2) 신청에 의한 면책’ 참고)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에 의한 면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신청사항은
감사권의보호관과
감사부서검토를 거쳐
면책자문위에 상정

① **(면책신청·접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관련 공무원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인적사항을 기재한 ‘**감사 관련 소명서**’와 소명서의 별첨 서식으로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감사원 내 적극행정지원단(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참조)

면책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향후 진행절차와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감사원 홈페이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진행상태 조회)에서 검토 단계별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하나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감사권익보호관 및 감사부서 검토)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 접수한 면책 신청서를 감사권익보호관과 해당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각각의 검토 의견을 취합한 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단, 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면책신청 사항인 경우에는 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와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란?

- 감사원은 2015년 9월 ‘감사원 외부시각’에서 소명인을 대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감사권익보호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異見)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감사권익보호관은 소명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에서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한
여러분의 소명 내용이 감사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면책자문위에서
면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

③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검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상정된 면책신청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합니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요

- **[구성]**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률·행정·기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감사원장이 30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촉, 임기 1년(연임 가능)
- **[기능]** 적극행정면책신청 사건이 면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자문하며, 감사원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
- **[운영]**
 - －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매 회의에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 5명 참여
 - － 지정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위원회 논의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

④ **(단계별 결재권자 검토)** 자문위원회의가 끝나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은 자문 결과가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단계별 결재권자 또는 주심 감사위원(주심 감사위원 검토 단계에서 면책신청이 접수된 경우)에게 자문 결과를 송부합니다.

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아 면책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신청인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 요구를 한 경우(면책 사유를 인정하여 감경한 경우 포함)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 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합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해당 감사에서 면책이 신청되었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지적 요지와 인정 여부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개요표’를 작성·기술하고, 면책 검토사항별로 개별처리안에 신청인의 면책신청 내용과 면책 기준별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검토 결과를 기재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면책자문위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결과 처리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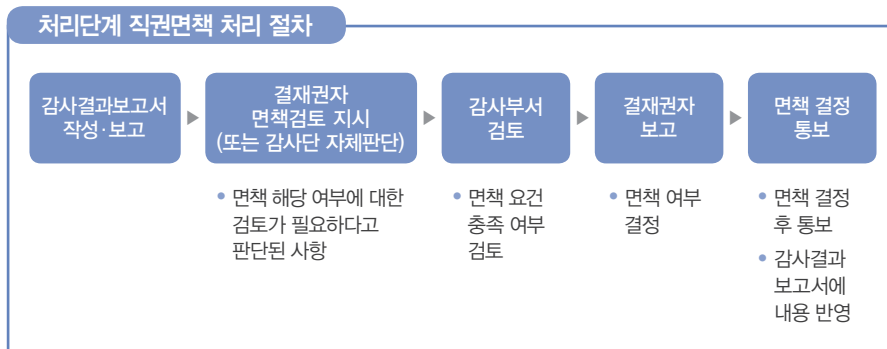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불가능하나, 확정된 처분요구 등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제도란?

-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재심의 청구는 처분요구서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청구 가능 (단, 변성판정은 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3) 처리단계 직권면책

처리단계 직권면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② **(결재권자 면책검토 지시/감사부서 검토)** 감사단은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적극행정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감사결과보고서 검토·결재권자로부터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합니다.

③ **(결재권자 보고)** 검토 결과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면책 결정 통보)** 면책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합니다.

2) 자체감사의 경우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여부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면책의 요건을 검토하여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위와 같이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 세부 절차는 자체감사기구가 각각 자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적극행정면책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적극행정면책 관련 Q&A

제도간 차이

Q1 | ‘적극행정면책’과 ‘감사소명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 감사소명제도는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소명제도 중 하나이고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의 경우에도 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 ‘직권면책’은 ‘신청에 의한 면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은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과 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종료 후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나뉩니다. 또한, ‘직권면책’은 감사 실시·처리단계에 따라 감사 착수 후 감사 현장(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 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구분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Q1 | 감사원 실지감사 기간에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실지감사 기간에는 해당 기관 감사실을 통해 감사단에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면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2 |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면책은 감사원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감사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적극행정면책 관련 Q&A

신청방법 대상

Q3 | 공직자가 아닌 계약업체, 납세자 등도 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해당 감사와 관련된 계약업체 또는 납세자 등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 사유로 소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4 |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A 본 사례집 160쪽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참고 하셔서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적극행정 면책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030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적극행정 면책담당자 앞

Q5 |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출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면책대상자를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요구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의 명의로 면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1 |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 면책 신청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감사사항의 처리·검토 상황, 자문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 면책을 신청해도 어차피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면책 신청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면책자문위원회 구성)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총 16건의 '신청에 의한 면책'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Q3 |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 그대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것인가요?

▶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Q1 |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면책 신청 시 감사권익보호관이 신청인의 입장에서 면책 신청 내용이 감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02-2011-2736)을 통해 감사권익보호관과 일정 조율 등을 거쳐 면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1.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www.bai.go.kr) > 하단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배너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BAI). The header includes the BAI logo, name in Korean and English, and navigation links like HOME, Sitemap, and English.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image of the BAI building and a list of recent news items.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search bar and icons for various services. The footer contains a row of icons for different services, with the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icon circled in red.

2. 제도소개 맨 아래에 “소명서” 및 “사유서” 등 서식 다운로드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OME 사이트맵 어린이마당 ENGLISH

알림 감사결과 자료실 감사제보센터 심사제심의청구 참여와 제안 정보공개 기관소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제도소개

사례집

모범사례

진행상태 조회

제도소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개요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4. 감사권익보호관제도

감사권익보호관제도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소명인(감사로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15. 9.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소명인에게 연락하여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감사원 2별관 1층 소제)에서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관련 만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배석하여 자유롭게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11-2736(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다운로드](#)

[감사 관련 소명서](#)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 관련 면담신청서](#) [적극행정면책 검토요청서 \(원장면제 신청서 작성\)](#)

3. 소명서 및 사유서 작성 후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소: 030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적극행정면책담당자 앞

4.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조회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OME 사이트맵 어린이마당 ENGLISH

알림 감사결과 자료실 감사제보센터 심사제심의청구 참여와 제안 정보공개 기관소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제도소개

사례집

모범사례

진행상태 조회

진행상태 조회하기

감사원으로 접수한 소명사항의 진행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확인

신청자명

관리번호

연도선택 - 구분선택 -

* 모드로 전송된 관리번호를 입력하세요.

[진행상태 조회하기](#)

T H E B O A R D O F A U D I T A N D I N S P E C T I O N O F K O R E A

제3절 면책 사례

-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 · 불인정 사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12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검토 · 심의를 완료한 적극행정면책 사례를 분석하여 아래 표와 같이 면책 기준별로 인정 · 불인정 사유를 유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사례는 지적 내용, 신청 취지 및 인정 여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면책 기준		인정	불인정
공공의 이익		- 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 누수 방지 도모 -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 도모 - 국민불편 해소 도모	-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행위 - 기존보다 공익성이 저하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 당초 계획한 공익적 목적 달성이 곤란
업무의 적극적 처리		- 시급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 -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 검토 미흡 등 적극성 부재 - 업무 소홀 등 무사안일적 태도 -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를 처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 행위와 연관 -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와 연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 위원회 심의, 관련자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 -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 준수 -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해당 절차의 목적·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치유 가능한 경우	- 변경 공고 등 중대한 절차 누락 -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 누락 - 결재 또는 승인 절차 등을 누락 -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축소·은폐·기망·누락하여 보고

참고사항

본 사례집은 면책 검토·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별 구체적 상황 및 업무처리 방식·과정 등에 따라 면책검토 결과가 달리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인정 사례의 지적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본 사례집을 일선 행정 현장의 업무매뉴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인정 사례

[1]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경우

- 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 ②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익매각 추진
- ③ 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2] 예산 누수 방지를 도모한 경우

- 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 · 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② 신속한 지방 이전을 위해 낙찰 포기각서만 징구한 채 후순위업체와 계약 체결

[3]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 경우

- ①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사전 승인 없이 수주한 계약을 사후 승인

[4] 국민불편 해소를 도모한 경우

- ① 장기간 중단된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해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

불인정 사례

[1] 특정인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성 행위인 경우

- ①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 ②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
- ③ 불필요한 배수로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

[2] 기존 업무처리방식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① 사유재산 보호 등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허가
- ② 당초 계획과 달리 무면허자를 채용하여 전문 운전인력의 부족 초래

[3] 당초 계획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데도 추진한 경우

- ① 주민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변경
- ② 사권이 설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 매입

인정 사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1 사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경우

01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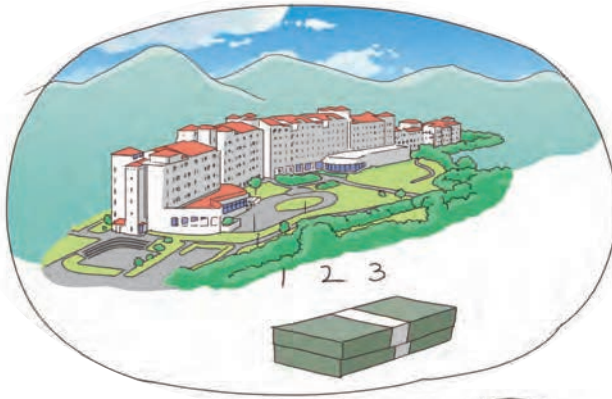
지적 내용

A군에서 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 A군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용

신청 취지

-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고
-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레저시설 등)로 이용객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득이 분납을 허용함



자금난 때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 납부하고 싶습니다.



분납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인정 여부



인정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낙후지역에 이용객 등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02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익매각 추진

지적 내용

A군에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시행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매각하고, 준주거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A군은 시행사가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다시 계약금액을 감정가액 이하로 감액하고 4차례 분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사업수익 악화를 초래



신청 취지

- 이 건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 보상한 후 산업 용지 분양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선행조건으로 분양률 25%를 달성할 것을 요구 받아 해당 용지를 수의매각 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음
- 또한, 이후 수의계약 상대방이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을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동의함

인정 여부



-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될 경우 공장 등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 수의매각과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에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03

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지적 내용

A도에서 기업 입지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첨단우량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업용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업용지 매각 이후 업체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익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고
- 「민법」 제59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공업용지 매각 이후 계약상대자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과 그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공업용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
- 그런데 A도는 환매권 행사가격을 ‘계약금액과 그 매매비용’이 아닌 ‘공인감정 평가기관이 산출한 시세가격’으로 하는 조건으로 B업체와 계약을 체결
- 그 결과 B업체가 부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제3자에 매각하기 위해 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데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 환매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신청 취지

- 낙후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하고자 부지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공장입지에 불리하여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함



인정 여부



인정

- 부지 매각을 통해 공장이 유치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대상 부지의 입지가 불리하여 매각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2 예산 누수 방지를 도모한 경우

사례

01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적 내용

A부 과장 ○○○ 등 3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카드사가 유가보조금 산정·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우 또는 LPG를 구매·사용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따라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카드사가 '경유구매카드 결제 내역은 실제 구매 유종과 관계없이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유종을 추정'하는 등 실제 주유 유종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카드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방치
- 그 결과 실제 주유한 유종에 상관없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고, 감사 기간 중 유류구매카드의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LPG 충전소에서 경유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발견됨



신청 취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전산화하고 유가보조금 산정·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 이로 인해 사후 적발이 가능하게 되어 부정수급이 차단되었고, 부정수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가 개선되는 공익적 효과를 얻음

인정 여부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방지업무 편의가 개선되고 사후 적발을 위한 자료 검증이 가능해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은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02

신속한 지방 이전을 위해 낙찰 포기각서만 청구한 채 후순위업체와 계약 체결

지적 내용

A원에서 신청사 건립공사에 필요한 외장판넬 등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추진하면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1, 2순위 업체가 “자체심사 결과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것 같다”라고 하자 해당 업체들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낙찰 포기각서’만 청구한 채 후순위인 B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한 후 B업체와 계약 체결



신청 취지

-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이 분명한 1, 2순위 업체의 심사서류를 모두 검토하여 관급자재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이주 직원의 입주 시기 관련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선순위업체로부터 낙찰 포기각서를 징구받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음

인정 여부



- 구매계약을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추가 이전비용 발생 및 이주시기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개인주의"에서 "기관주의"로 감경됨

사례

3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 경우

01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사전 승인 없이 수주한 계약을 사후 승인

지적 내용

A은행은 채권단으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업체의 수주계약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 관련 협약에 따르면 B업체가 수주계약 체결에 앞서 A은행에 승인을 요청하면, A은행은 계약의 이행 및 영업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 B업체가 수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A은행은 거래 상대방인 선주사의 신용상태나 사업이행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승인
- 그 결과 뒤늦게 선주사의 신용도가 낮은 것을 확인한 후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설계비 등 손실 발생

신청 취지

-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조업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당시 조선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신규수주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당시 사후 승인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이 안 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진행을 위해 일단 승인한 후 선주사의 신용상태 및 사업이행능력에 대해 검토를 진행
- 선주사의 거래신인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후 즉시 계약 이행을 중단시켜 대규모 추가 손실을 차단함



인정 여부

인정

- 조업 물량이 확보되면 기업회생에 도움이 되고 기업회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 어렵게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을 일단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선주사의 신용 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공익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사례

4 국민불편 해소를 도모한 경우

01

장기간 중단된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해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

지적 내용

A청에서 2018년 4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제주항로 정기 여객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면서

- 참가 업체 중 B업체가 제안서(인력투입계획)에 “선원 17명 확보”로 기재하고는 이를 입증할 고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실제 제안서 평가 시점에 17명 중 14명만 확보한 상태였는데도
- A청은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증빙 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여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

신청 취지

-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객 및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제주 사이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고
-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던 2016년의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으로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설법인의 신용도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7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였음



인정 여부



인정

-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인력투입계획 항목의 평가 대상인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 여부가 '선원'을 평가하는 것이지 '선원 예비원'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호했던 부분이 있고
- 장기간 중단된 여객선의 운항 재개를 위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불인정 사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1 사례

특정인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성 행위인 경우

01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지적 내용

A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 매입공고 등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주거·지역 여건, 준공기간 등을 감안하여 위 공사에서 산정한 등급별 협의 매입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상위등급의 협의매입률 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 협의 기한 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가 결렬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A공사는 6개 업체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여 2개 업체는 협의를 완료 하고 4개 업체와는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 협의가 결렬된 4개 업체 중 B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고 연장된 협의 기한까지도 협의가 안되자 재협의를 진행한 후 매입가격을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 보다도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

신청 취지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함



인정 여부

불인정

- 이 건 사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상 결렬 후 재협상을 하고 매입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목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문책요구함

02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

지적 내용

A공단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 위 공단의 「기부금품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는 기부금품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기부자와 이해관계(허가, 공사, 용역, 임대)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영업수익 이외의 수익은 기타수익으로 계리하고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도
-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단 보조사업 자금 수탁 은행인 B은행으로부터 사무실 이전비를 지원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위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음



신청 취지

- 소상공인에 대한 쾌적한 상담환경 조성, 원활한 금융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였고 금융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인정 여부

-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단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03

불필요한 배수로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

지적 내용

A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사업비 58억 원)을 추진하면서

- B면사무소에서 ‘前 부군수의 별장 진입로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천 시 우수가 많이 흐르지 않는 등 배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주민숙원사업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도
- A군은 위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우천 시 농경지 관리 곤란’을 사유로 前 부군수의 별장 진입로 배수로 설치 공사(사업비 3천만 원)를 주민숙원사업 목록에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



신청 취지

- 주민숙원사업은 소수의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며, 前 부군수 별장은 지리 상 마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 공사를 통해 폭우 시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등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

인정 여부

- 해당 공사는 前 부군수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B면사무소에서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주민숙원사업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공익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기존 업무처리방식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01

사유재산 보호 등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허가

지적 내용

A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 열거된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
- 그런데 A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전(田)과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가 6건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그대로 허가

※ 해당 토지는 '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다가 '78년 '전(田)과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나

- '16. 6월 토지 소유자가 한시 허용규정('14~'15년 허가 신청한 건에 한해 적용)에 따라 해당 토지를 29개 필지로 나누어 29개 간이소매점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다시 '대지'로 지목을 변경
- 이후 소매점을 자진 철거하여 위 29개 필지를 6개 필지로 합필한 후 '16. 10월 6개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허가처리

신청 취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주택 등 신축을 허용하지 않아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었고, 이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한시 허용규정이 제정됨
- 그런데 위 허가신청 토지는 한시 허용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만료 전 조금하게 소규모 가설형태로 허가를 받다 보니 분양이 어렵고 도시미관 저해 및 불법 방치의 우려가 있었음



- 이에 위 소규모 가설형태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큰 규모의 건축물로 다시 허가하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건축을 허가한 것임

인정 여부



불인정

- 도시의 미관 저해 및 사유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추구되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공익(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과 그 법률 제정 취지를 넘어서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02

당초 계획과 달리 무면허자를 채용하여 전문 운전인력의 부족 초래

지적 내용

A공사에서 지하철역 사고 후 ‘특수차 운전 및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 B시의 수습대책^{*}에 따라 필요인력 132명 중 철도장비 운전면허를 소지한 9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123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 하는 것으로 결정

^{*} 민간위탁영역으로 처리하던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는 A공사 등이 직접 수행하고, 무자격자 등을 제외한 위탁업체의 자체 채용 직원은 A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

- 그런데 운전면허 및 정비관련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작업보조자’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채용을 종용하자
- A공사 이사회에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사유로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 조건부(1년 이내 철도장비 운전면허 자격 취득)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
-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없는 5명이 채용됨으로써 A공사가 전문 운전인력을 부족하게 운용하는 결과 초래

신청 취지

- 안전 및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철 운영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 및 고용 안전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



인정 여부



- 무자격자를 '1년 이내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채용한 것은 당초 계획과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A공사의 전문 운전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문제가 초래되었으므로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사례

3

당초 계획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데도 추진한 경우

01

주민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변경

지적 내용

A시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B지역 및 C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을 기존 수용방식*에서 관리 처분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시행자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관리처분방식: 현물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정산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정비사업의 손실과 수익이 모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사업방식

-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 후 관리 처분방식으로 변경 처리

신청 취지

-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였고, 사업 시행 전까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인정 여부



불인정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함

02

사권이 설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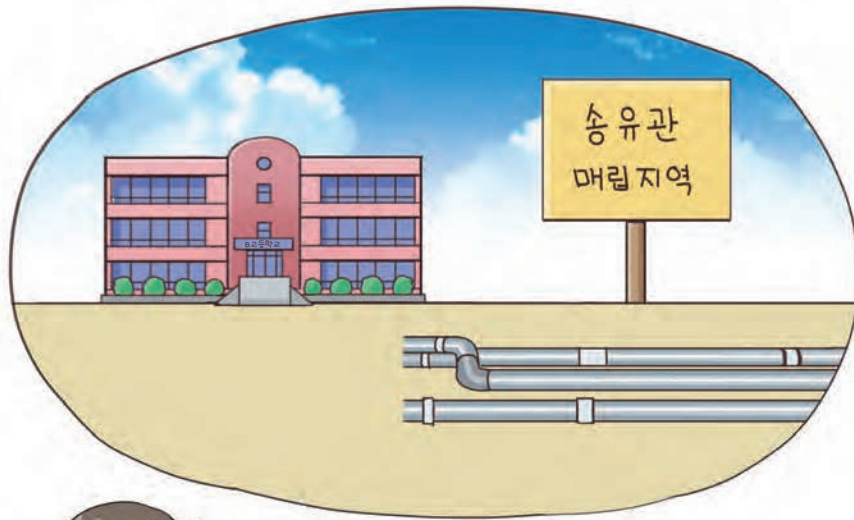
지적 내용

A교육청은 B고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데도
- B고 행정실장 ○○○는 해당 부지에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작성
- 또한, 이후 A교육청 재무과 세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과(재산팀)에서 지상권 설정 사유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지 않자 지상권을 일시 해지한 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 토지 매입에 개입
- 그 결과 매입 부지를 교실 증축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책로 등으로 이용

신청 취지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족한 주차장 및 야외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주변 다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없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 당시 매입 협의가 가능한 토지주를 알아보고 매각 의사를 확인한 후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제출하였음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토지 소유주에게 일시적으로만
해지해달라고 하자.

인정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상권을 일시 말소 후 재설정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 지상권이 설정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송유관 매설토지를 취득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반면, 취득 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 송유관 이설 비용부담까지 발생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인정 사례

[1] 공공의 안전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 경우

- ① 시급한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관청 협의 전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 ②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 ③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 실시

[2] 발생 가능한 손실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①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입찰참가업체에게 보완자료 요청

[3]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 경우

- ① 위탁 개발한 종합청사의 낮은 임대율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면제 등 추진
- ② 자체 친인척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장 안전 업무 위탁업체 인력 직접 채용 추진

불인정 사례

[1] 검토 미흡 등 적극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① 단순 검토 미흡으로 인해 허가대상이 아닌 부지에 개발행위 초래
- ②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평가 제외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③ 잘못된 재무구조 개선 효과 분석에 따라 자산 매각

[2]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적 행태

- ① 법령 질의 회신 및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3]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를 처리

- ① 법령상 매수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매입
- ② 이용 가능한 콘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인정 사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1 사례

공공의 안전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 경우

01

시급한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관청 협의 전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지적 내용

A군은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면허관청과의 매립 협의 등 매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시·군) ➡ 매립기본계획 고시(해수부) ➡ 매립협의(광역시·도)
➡ 매립실시 계획 승인(광역시·도) ➡ 매립공사(시·군) ➡ 매립준공검사(광역시·도)
➡ 매립지 등기(시·군)

- A군은 매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미등기 상태에서 위 도로를 사용

신청 취지

- 강풍 및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 되는 등 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였음



인정 여부



-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02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지적 내용

A시는 관내 보건소로부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던 메르스 의심환자의 확진 사실을 보고받고

- 감염병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메르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후 총회 장소의 CCTV 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지 않은 채
-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 불편 초래



신청 취지

- 당시 총회 장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혼잡하였고 투표로 인한 자리 이동이 있어 참석자 간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음
- 이에 참석자 중 밀접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 회의 및 역학조사관 자문을 거쳐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조치 하기로 함

인정 여부



-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A시 소속 역학조사관이 1명에 불과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전문가 회의 및 역학조사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03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사 실시

지적 내용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가 발생하여 철도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 이용객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신청 취지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미끄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결로 해소 공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 입찰 등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적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어 결재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 해소 공사를 진행함

인정 여부



-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보고한 후 내부 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결로 해소 공사를 추진하는 등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 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발생 가능한 손실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01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입찰참가업체에게 보완자료 요청

지적 내용

A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3차) 사업자 선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 입찰에 참여한 B업체와 C업체 중 B업체에만 보증 수질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 B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B업체의 3개 항목 점수를 '0점' 처리하여 C업체가 시행사로 최종 낙찰

신청 취지

- B업체가 제안한 공법으로는 보증 수질 달성 가능 여부가 담보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준공 지연, 손해배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시공사는 입찰 시 제시한 보증 수질을 달성하여야 준공 처리가 가능하며, B업체와 동일한 공법을 제안한 C업체의 경우 B업체와 달리 3차 처리를 거쳐도 3개 항목의 농도(목표 방류 수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안서를 제출

- 보증수질 달성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그대로 평가·선정하는 것은 향후 가동 중단, 재정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



인정 여부



- 보완자료 요청은 제안업체의 시공능력과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목표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해당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사례

3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 경우

01

위탁 개발한 종합청사의 낮은 임대율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면제 등 추진

지적 내용

A구는 B공사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A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 B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한 후 위탁기간(22년) 동안 청사를 임대·관리하고, A구는 발생한 임대수익 등으로 B공사에 개발원리금(약 302억 원)을 상환하는 방식

- 청사 임대율을 높이기 위하여 B공사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인 C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 기존 입점업체 명도·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후 임대료 등을 활용해 충당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25억 원의 재정부담을 결정

신청 취지

- 상가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탁개발비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임대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 상가 에스컬레이터 및 주차장 개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인정 여부



인정

-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저조한 임대율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02

자체 친인척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장 안전 업무 위탁업체 인력 직접 채용 추진

지적 내용

A공사는 ○○역 사고 수습대책에 따라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의 용역 위탁업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하고 제6회 이사회에서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은 배제하기로 의결

- 이후 위탁업체 친인척 실태를 조사하여 21명이 위탁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합리적인 친인척 배제 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지원자 본인으로부터 채용 경로(공채/특채)를 파악하여 특채로 응답한 인원만 배제하기로 결정한 후 면접위원에게 배제대상자 명단을 제공
- 그 결과 총 15명의 친인척이 위탁업체 채용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그중 14명이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

신청 취지

- 위탁업체 직원을 신속하게 직접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7회 이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는 곤란하다’는 발언이 있어 평등권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거쳐 채용 계획을 마련하였고
- 전환대상자들의 채용 경로는 위탁업체의 비협조로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 회의를 통해 특채로 조사된 10명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채용을 마무리하였음



인정 여부



- 당시 신속한 직영체제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에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친인척 관련자 21명을 파악한 후 나름대로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중징계요구"에서 "경징계요구"로 감경됨

불인정 사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1
사례

검토 미흡 등 적극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1

단순 검토 미흡으로 인해 허가대상이 아닌 부지에 개발행위 초래

지적 내용

A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대표단면)에서 단면이 등고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B업체가 제출한 ‘경사도 조사서’에는 최대경사도의 측정 단면이 등고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정되지 않았고, 최대경사도(14.92도)가 평균 경사도(16.4도)보다도 낮게 명시되어 있는 등 조례에 따라 경사도가 측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 취지

- 최대경사도 산정 시 복수의 단면 중 최적 단면을 담당자가 판단하여 대표단면으로 선정하여 측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단면 및 최대경사도를 검토하는 등 말은 바 업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음



인정 여부

불인정

- 신청인이 조례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최대경사도가 과소 산정된 '경사도 조사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허가한 것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 단순히 '경사도 조사서'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02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평가 제외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적 내용

A시는 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낙찰자 선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등에 업체 명기 및 유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안 신청을 무효로 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도
- 사업제안서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B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업체명이 명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신청 취지

-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하고 10일간 검토하였으나 업체별로 그 분량이 500여 쪽에 달해 부속서류에 기재된 업체명 표기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인정 여부



-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업체명을 명기한 경우 제안 신청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이상 제출서류에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책은 불인정 되었으나 소명이 일부 인정되어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03

잘못된 재무구조 개선 효과 분석에 따라 자산 매각

지적 내용

A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본사 신사옥을 B자산신탁에 임차조건부로 매각하면서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기재부)에 따르면 자산 매각 시 자금유입 및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A공사는 매각 후 발생하는 임차료가 부채 상환 시 이자비용 감소액보다 크므로 자금유출이 더욱 증가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가 재무제표상 부채(금융리스)로 인식되어 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사장에게 부채비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의결

※ 금융리스: 자산 매각 후 법적 제한 등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의 자산, 향후 지급할 임차료를 부채로 인식

※ 운용리스: 자산을 빌려 이용하는 대가로 임차료 지급, 향후 지급할 임차료를 부채로 미인식

신청 취지

- 당시 경영악화 상황에서 임대조건부로 사옥을 매각할 경우 해당 거래가 운용 리스로 회계처리 되어 매각 대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개선(부채비율 감소)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정 여부



- 해당 신사옥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주의무가 부여된 특수한 성격의 자산이므로 임차조건부 매각 이후 금융리스로 분류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공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적 행태

사례

01

법령 질의 회신 및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적 내용

A시가 행정재산인 농산물도매시장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 주무부처로부터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고,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고도
- 도매시장관리사무소만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할 경우 도매시장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도매시장을 민간에 매각

신청 취지

-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인정 여부



- 주무부처 질의 회신 및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사례

3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를 처리

01

법령상 매수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매입

지적 내용

A구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B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 6필지를 매입하면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 재산으로 취득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당초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사권이 설정된 C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낮은 D부지를 소유자의 매도희망 가격대로 추가 매입
- 게다가 A구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차장 건립 여건에 더욱 적합한 인근 부지의 소유자들이 비슷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매매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음
- 그 결과 당초 계획과 비슷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주차면수는 40면에서 28면으로 줄어들고, 사권이 설정된 부지로 인해 주차장 건립이 지연됨

신청 취지

- 주차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부지 매입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매매 협상으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 발전과 이용객의 편의, 인근 주민의 이익 등 공익에 기여함



인정 여부



불인정

- 공유재산법령상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취득할 수 없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대체 부지가 있었음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02

이용 가능한 콘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지적 내용

A군에서 B개발의 C콘도 건축을 허가하면서

- A군에서 이미 D콘도 회원권 등 연간 240일의 숙박이 가능한 콘도회원권(8구좌)을 보유하고 있고, 구입 후 연평균 이용률이 27% 정도에 불과함에도
- 이미 구입한 D콘도 회원권의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C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매(22구좌, 연간 642일 숙박 가능)
- 그 결과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 상대방인 B개발에 사실상 자금 지원의 특혜 제공

신청 취지

-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회원권 구입비는 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님



인정 여부



불인정

- 이용 가능한 콘도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원권 구입 금액만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를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인정 사례

[1]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를 잘못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사례

[1] 이권개입, 알선 · 청탁 등 행위와 연관된 경우

- 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②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요구

[2] 금품 · 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가 연관된 경우

- ①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

인정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1 사례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01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적 내용

A공사 팀장 ○○○은 유럽국가에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배당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 업체선정 절차 진행 도중 B업체에 3일을 기한(국가계약법령 상 10일 기한)으로 정량평가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구한 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
- 또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뒤에 당초 자신의 정성평가점수가 잘못 되었다는 사유로 점수를 조정하여 당초 1위였던 B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였던 C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

신청 취지

-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 유럽국가에 대한 배당세액 환급신청을 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배당세액 환급신청 업무를 새롭게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협력 인력이 없어 원활한 세금환급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인정 여부



인정

- 배당세액 환급신청 업무는 국내 국가자금 운용기관 중 A공사가 처음 시도하면서 국가와 공사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 해당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은 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02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를 잘못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적 내용

- A청 국장 ○○○은 수증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면서
-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설선 및 선별기를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증빙자료(건설기계등록원부, 중기매매계약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한편, ○○○국장은 선별기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B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부하 직원에게 B업체가 선별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재검토하도록 지시
 - 이후 부하 직원이 선별기 최초 매입일(2009년)보다 양수일(2007년)이 빠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진위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B업체가 선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구조조정 지원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
 - 그 결과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B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담당 국장으로서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가 검토하여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B업체가 구조조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행정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것으로 B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음



인정 여부



인정

- 담당 국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과정에 부당한 업무지시나 알선·청탁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은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에서 국장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주의요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

：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실무자들은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불인정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1 사례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 행위와 연관된 경우

01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A군 계약담당자 ○○○은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 평소 알고 지내던 양수기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의 명의로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후
- 위 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6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자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 A군은 도서(島嶼)로만 형성되어 있어 재해에 취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양수기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고의성이나 금품수수 정황이 없으며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잘못되었음



인정 여부



불인정

- 계약과정에 금품수수 정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나, 지인으로부터 계약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02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요구

지적 내용

A부 과장 ○○○은 A부의 직무상 감독 대상인 B협회에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이 직위에 특정인을 선임하도록 요구

- 또한 ○○○은 A부 선배였던 △△△로부터 자신을 C협회의 사무국장직으로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협회를 담당하는 A부 팀장에게 채용을 부탁

신청 취지

- 상근부회장으로 특정인을 추천한 것은 B협회의 추천 요청에 따라 A부 내부에서 적임자 선발 과정을 거쳐 추천한 것으로서 B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음
- ○○○은 △△△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특정인 추천은 협회 임원 등 선임 관련 업무의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소개 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음



인정 여부



불인정

-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로 하여금 지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사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가 연관된 경우

01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

지적 내용

A기술원 책임연구원 ○○○ 등 3명은 연구비 집행·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 실제 구매하지 않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한 후, 업체에 지급된 돈을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
- 또한 연구재료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

신청 취지

- 과제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정부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반납 비용, 연구원 명절격려금 등 공통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선처 요망



인정 여부



- 연구비를 횡령하고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인정 사례

[1] 위원회 심의, 관계자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주식을 할인 매각
- ②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해지
- ③ 수요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사업 추진

[2]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 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수익계약 체결
- ② 감리단 검토 및 결재권자 보고 후 설계 변경을 승인

[3]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해당 절차의 목적 ·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치유 가능한 경우

- ① 세관장 협의 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불인정 사례

[1] 변경 공고 절차 없이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① 공고된 심사기준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임의 변경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경우

- ①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② 면허관청 협의 없이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

[3] 결재 또는 승인 절차 등을 누락한 경우

- ① 승인 절차 없이 내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여
- ② 지출 관련 서류 확인을 태만히 하여 횡령 사건 발생
- ③ 제안서 검토 · 평가를 생략한 채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익성 분석 없이 운영 기간 산정

[4]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축소 · 은폐 · 기망 ·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① 개발 미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인정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사례

위원회 심의, 관계자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

01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주식을 할인 매각

지적 내용

A공사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비상장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매각 공고 시 예정 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매각주간사로부터 사모펀드가 상장 차익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장 후 매도가격 대비 15~20% 가량의 수익률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이 수익률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매각가격의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자
-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할인율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받아 정하기로 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식의 평가액에서 26.9% 할인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 그 결과 비슷한 시기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각



신청 취지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연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매각 주간사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격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검토하였고
- 「공적 자금 관리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므로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법령에 따른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음

인정 여부



- 「공적 자금 관리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할인율을 결정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문책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02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해지

지적 내용

A부(B과)는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2011~2014년)에 따른 경영부실대학 지정업무를 2015년 9월 종료하고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하면서

- 기존 경영부실대학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는 경우 국가 장학금 I유형 지원(저소득층 대상)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
- 그런데 A부(C과)는 2013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D대학교와 F대학교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는데도
- 위 대학들이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따른 경영컨설팅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사유로 G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해지를 요청하자
- 경영부실대학 지정 조건부해지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제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장학금 지원제한을 해지

신청 취지

- 경영부실대학 지정업무를 종료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서 기존의 협약에 따라 이행과제를 완료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었고
- 이에 A부와의 협약을 믿고 대학이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국가 장학금 지원제한도 해지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재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였음



인정 여부

인정

- 대학교가 이행과제를 완료할 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재학생들의 신뢰 보호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이 인정되고
- 「G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제한을 해지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기관주의 요구"로 변경됨

03

수요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사업 추진

지적 내용

A시에서 B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4개 업체에 무상 공급해 오다 B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 유상 공급을 추진하면서

* 하수처리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 재처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자에게만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위 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문제가 없고,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수를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 시의회로부터 하수처리수 무상 공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업체들에게 재처리수를 유상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10억여 원의 사용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에 경제적 부담 초래

신청 취지

- B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은 시의회 업무보고시 하수처리수 무상 공급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였고
- 기존 수요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재처리수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음



인정 여부



- 재처리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여 사용 동의를 받는 등 일반적으로 재처리수의 공급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 공중위생성과 수질 환경 관리의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리수를 우선 공급하려고 하였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개인주의요구"에서 "기관주의요구"로 감경됨

2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사례

01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수의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공단은 B회관의 승객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 위 공사는 주요 구성품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신규 승강기 제작·설치와 다름이 없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도
- '부품 호환성'을 사유로 들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인 C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 해당 건물은 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나 1일 상주 인원 및 내방객이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로,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우려되어 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음
- 해당 공사를 성능개선공사로 판단하여 승강기 주요 구성품 중 상태가 양호한 주요 부품은 재사용하고 작동, 기능 및 상태가 불량한 부품 위주로 교체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조달청 유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인정 여부



- 다수의 시민이 해당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구성품의 재사용 가능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수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02

감리단 검토 및 결재권자 보고 후 설계 변경을 승인

지적 내용

A공단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상대자인 B업체가 제출한 설계 변경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 위 공사의 입찰안내서 등에 따르면 1일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300톤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 B업체가 1일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270톤으로 줄이는 대신 기존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 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수 효율을 높여 이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 책임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결재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설계 변경을 승인
- 그 결과 당초 설계 처리용량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탈수기 운영비가 7.6~39.3%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한 후 감리단의 검토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설계 변경을 승인하였음



인정 여부

인정

- 담당자가 책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결재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한 후 설계 변경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문책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사례

3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해당 절차의 목적·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치유 가능한 경우

01

세관장 협의 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지적 내용

A시는 B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입주를 허가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입주허가 시 ‘양허물품’^{*} 취급업종은 관할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양허물품: 「관세법」 등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이만큼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약속(양허)한 농·임·축산물

- 그런데 A시는 관할 세관장과 협의 절차 없이 양허물품 취급업종을 영위하는 D조합법인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가하여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 기준 임대료의 26%) 및 세제 혜택(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부여

신청 취지

- D조합법인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E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시 사업 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고
- 투자유치가 부진하였던 B항 배후단지에 신규 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다만, 양허물품 취급업종의 경우 입주 허가 시 세관장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세관장 협의를 거치지 못했음



인정 여부



- 장기간 미분양 상태이던 향만 배후단지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관할 세관장 업무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할 세관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고 입주기업 심사 시 세관 관계자도 참여하였음
 - 해당 업체에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할 세관장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관세의 부당 감면·면제 방지)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회복 가능한 하자라고 판단됨
-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불인정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사례

변경 공고 절차 없이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01

공고된 심사기준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임의 변경

지적 내용

A시 팀장 ○○○ 등 2명은 ‘노면 하부 동공탐사 용역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공고를 한 후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도록 규정
- 한편, 용역계약 공고문에 따르면 기술지식 항목(배점 25점)은 3가지 세부 항목(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10점, 탐사자료 분석계획 8점, 동공관리방안 수립 계획 7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는 탐사실적 1개소는 5점, 2개소는 10점을 부여하고, 탐사자료 분석계획과 동공관리방안 수립 계획은 정성평가하는 것으로 규정
- 그런데 ○○○ 등 2명은 제안서 평가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지식 항목을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 위치와 각 참여업체가 제시한 동공 위치의 정확성 정도를 비교하여 그 순위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를 받자
-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한 후 공고 기준과 달리 평가함으로써 낙찰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타당성 심사, 건설기술 심의·일상감사,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계약, 준공 처리 등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음

인정 여부



- 공고된 심사기준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재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였는바 법령상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경우

01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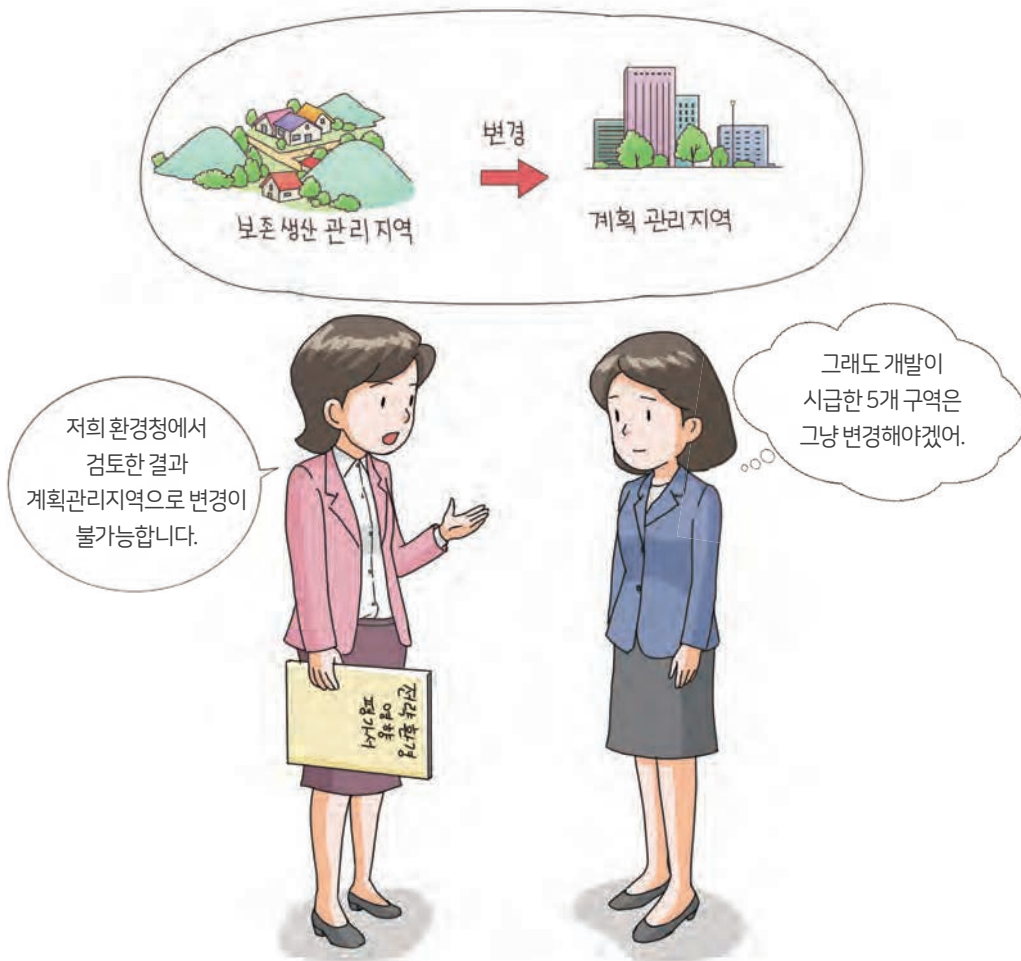
지적 내용

A도는 산하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보존·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
- 한편, A도는 보존·생산관리지역 24개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B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 내용을 통보받음
- 그런데 A도는 19개 구역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5개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해 B환경청장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 취지

- 산하 시·군 공무원들이 B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B환경청에서 이견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내오지 않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정 여부

불인정

- 협의 주체인 신청인들이 B환경청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하 시·군 담당자가 B환경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B환경청으로부터 추가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회신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 요구함

02

면허관청 협의 없이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

지적 내용

A시는 B도가 준공 인가한 C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준공 인가 조건 변경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가 매립면허 발급,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A시는 당초 7개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준공 인가 조건을 면허관청인 B도와 협의 없이 1개 도로만 설치하도록 변경
- 이후 A시는 (주)D가 위 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홍수량 산정 후 설계 반영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가하였고 위 업체가 공사 완료 후 우수관로 설계를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사준공을 신청하자 우수관 20m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
- 또한 A시는 (주)D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C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했는데도, 위 조치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기반시설 설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을 사유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이 가능

신청 취지

- 전체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 조성 계획에 맞게 다시 설치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1개 도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 실시계획변경인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



인정 여부



- 침수 예방을 위해 우선 1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태만히 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에 배수시설의 설계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변경된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함

사례

3

결재 또는 승인 절차 등을 누락한 경우

01

승인 절차 없이 내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여

지적 내용

A청 전산 담당자 ○○○은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 담당관이 지명한 운용관리자 외에 권한 없는 자가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인증서를 감사담당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등 보안 업무를 태만히 함



신청 취지

-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계약조건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음

인정 여부



- 계약조건에는 외부 인력이 상주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 관리자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02

지출 관련 서류 확인을 태만히 하여 횡령 사건 발생

지적 내용

A초등학교 행정실장 ○○○은 소득세 납부 등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 「B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 지급 시 계좌입금·전자자금 이체를 하고, 집행 후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행정실 소속 △△△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계좌이체하도록 결재한 지출 결의서와 달리 현금인출하는 것으로 작성한 출금전표에 출납원으로서 날인을 하였고
- 집행 후 영수증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의 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출납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하여 담당자 의견을 존중하였고, △△△이 치밀한 의도를 갖고 본인을 속여 횡령하였으므로 사전에 횡령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었음
- 또한 횡령 사실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즉시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횡령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려하여 변제하도록 하였음



인정 여부



불인정

- 현금 출금전표에 직접 출납원 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납부영수증이 붙은 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B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03

제안서 검토·평가를 생략한 채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익성 분석 없이 운영 기간 산정

지적 내용

A군은 (주)B와 ‘짚라인 조성사업 세부실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짚라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되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이 인정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제3자 제안 공고 후 최초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주)B를 사업자로 선정
- 또한 위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르면 BTO 방식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용·수익 기간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운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A군은 (주)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기로 하였고 별도의 검토 없이 20년의 운영 기간을 산정하였으며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부여

신청 취지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오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이행각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 보완하였음



인정 여부



- 소유권 이전 의무 면제 및 20년의 운영 기간 보장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평가, 제3자 제안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사례

4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축소·은폐·기망·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01

개발 미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지적 내용

A시 팀장 ○○○ 등 2명은 이동형 계측기의 준공검사를 수행하면서

- GPS 기능이 무선으로 실현되지 않는 등 2가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 납품업체로부터 케이스의 금형 제작이 늦어져 준공검사 이후 케이스를 만들어 장착하여 납품하겠다는 설명을 들어 이동형 계측기가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결재권자인 과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 처리하였고 준공 처리 후 8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체에서 납품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신청 취지

- 처리단계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음

인정 여부



- 결재권자에게 이동형 계측기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결재를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201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면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는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본 사례집을 작성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주요 적극행정면책 사례를 제출받아 계약, 시설·재산관리, 예산집행 등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수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유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를 참고한다면 면책 여부 검토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업무 유형	주요 면책 사례
계약	① 차질 없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공사일정·순서 및 설계 변경 실시 ②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다른 사업에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시설·재산 관리	①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익매각 ② 주거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 임차계약 체결 ③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예산 집행	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②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기타	① 병역처분변경으로 자원입영 후 귀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체검사 대상 처분

계약

1 사례

차질 없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공사일정·순서 및 설계 변경 실시

지적 내용

A공사에서 B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카운터 재배치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 공간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 계획 수립 후 4차례나 공사일정·순서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 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물량(전체공사 물량의 20%)을 신규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 중인 공사에 포함하도록 설계 변경

신청 취지

- 체크인카운터 공사일정 및 순서 등을 변경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여객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개선공사 중에도 여객편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임
- 환경개선공사의 계약 변경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공항운영 효율 및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었음



검토 내용 및 결과

- 급증하는 여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내외 공항 운영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1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편의를 위해 시설개선 계획 및 공사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업무처리의 공익성 및 적극성이 인정되며
- 추가공사는 진행 중인 공사에 반영하는 것이 신규 발주 공사에 포함하는 것보다 간접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고, 계약 변경에 필요한 내부 방침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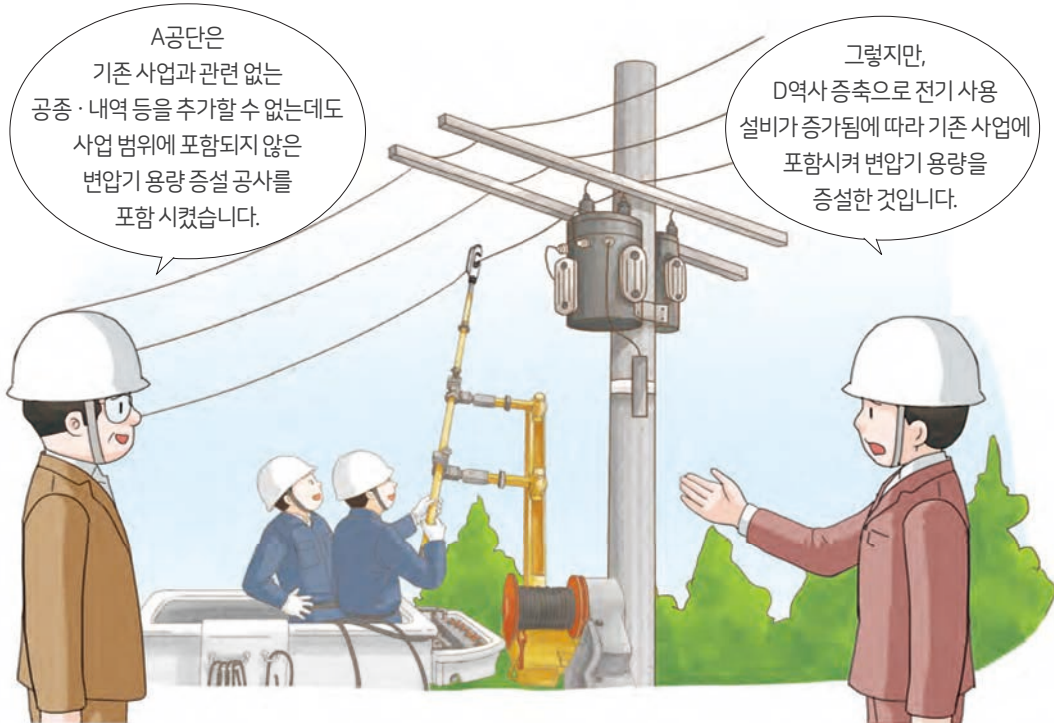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2 사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다른 사업에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지적 내용

A공단에서 B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종·내역 등을 추가할 수 없는 데도
- B건설사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C전기설 수전용 변압기 용량 증설 공사(1,000kVA→2,000kVA)를 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신청 취지

- B건설사업구간인 D역사 증축으로 인해 전기 사용 설비가 증가되어 D역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C전기실 수전용 변압기의 용량을 증설함으로써 D역사 운영에 필수적인 동력설비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 E전기실 장애 발생시 전원 이중화로 급전계통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검토 내용 및 결과

- D역사 증축으로 전기 사용 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B건설사업에 포함시켜 수전용 변압기 용량을 증설한 사항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시설·재산관리

1

사례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익매각

지적 내용

A공사에서는 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 A공사 「부동산관리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해당 부동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수익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익매각이 가능하고, 불용 결정된 1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수익매각할 경우에도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러나 A공사에서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수익 매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B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수익계약으로 매각

신청 취지

- 해당 토지를 공매할 경우 알박기, 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컸고 B아파트 건설 시행사 이외에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또한, 해당 토지는 면적이 작아 향후 A공사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공사가 계속 보유·관리하는 데에 실익이 없는 반면, B아파트 단지에는 꼭 편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매각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검토 내용 및 결과

-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경우 이를 악용할 이유가 아니라면 매수자 이외에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었고 해당 토지는 향후 아파트 진입 및 외곽도로로 조성되어 C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며
- 매각대금을 감정평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하여 결정하였는 등 업무 절차상 합당한 결재와 문서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사례 주거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 임차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공사 B지역본부에서는 사택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A공사의 사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사택의 환급임차보증금은 반납하고 신규 목적물에 대해서는 경영정책위원회 심의, 신규 사택 임차 승인 및 예산 한도 증액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러나 B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사택 소유주와 계약 기간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계약 기간 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퇴거 통보를 받자
- 기존 사택의 계약 기간 만료로 반환된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신규 사택 임차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반환된 보증금으로 새로운 사택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 회계연도 개시 전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나, 당시 배정받은 예산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신규 배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직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새로운 사택을 구하기 위해 기존 사택의 환급임차보증금으로 신규 사택 임차계약을 체결



검토 내용 및 결과

- 기존 사택 소유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부서 및 예산기획부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기존 사택의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차 사택을 확보하고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주거생활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 기존 임차사택 기간 만료로 인한 환급임차보증금 활용 이외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절차는 공사 사규에 따라 처리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사례

3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지적 내용

A공단은 공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을 결정 하면서

-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A공단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A공단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시행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낭비

신청 취지

- 건물의 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실제 재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사용료 수입을 산출하였고
- 실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의 15%에 불과하였음



검토 내용 및 결과

- 재산가액 산정 업무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으나 국유 건물의 사용료 수익을 높이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예산집행

1 사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지적 내용

A공사는 B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보상 시 변상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사 「취득경비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3억 원 미만의 취득경비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 A공사는 취득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B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17명에 대한 변상금을 공사가 지급한 후 보상금을 지급

신청 취지

- B지구는 주민 대다수가 국·공유지 및 공동묘지 위 무허가 불량주택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등 거주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였고,
- 개별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변상금 부담 증가와 과소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협의보상 유인방안으로 변상금을 공사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검토 내용 및 결과

-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 대한 적기 보상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취지가 공익에 부합하고,
- 변상금 금액이 소액인 반면 보상협의 대상(17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단장에게 보고 후 변상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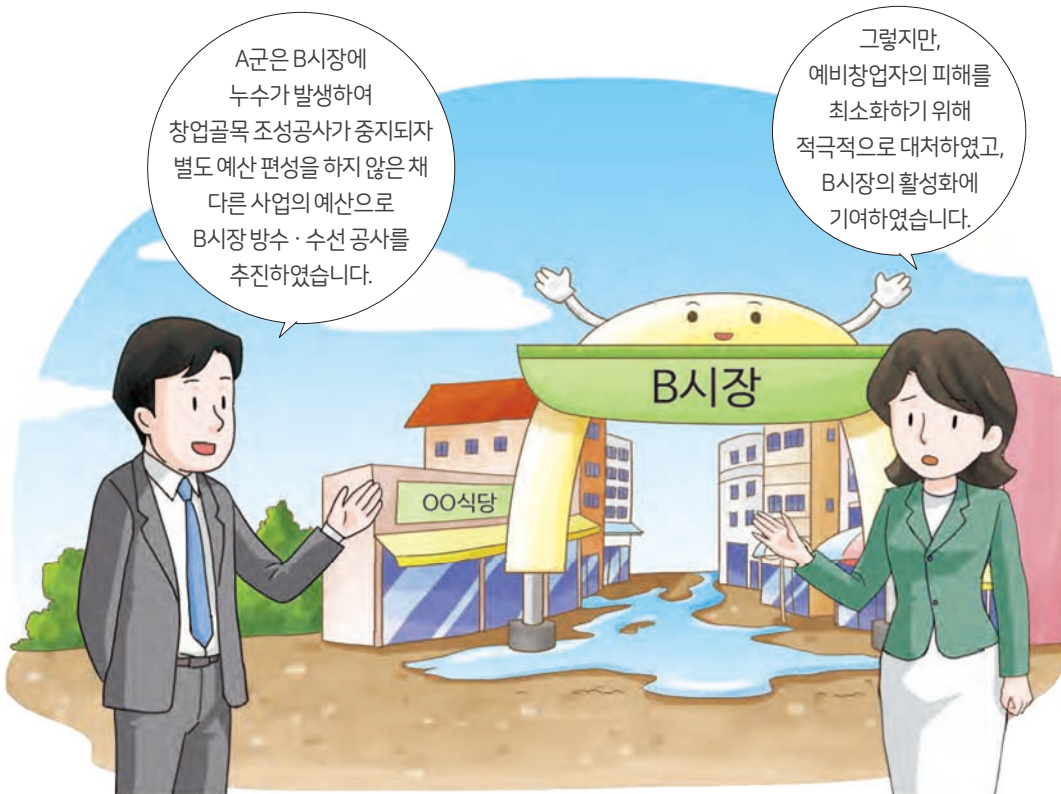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지적 내용

A군은 B시장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B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창업골목 조성공사가 중지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B시장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



신청 취지

- 창업골목 조성공사 추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공사가 중지되어 예비창업자의 창업이 지연되는 등 생계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의 조기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

검토 내용 및 결과

-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현재 청년 창업 23개 점포가 성황리에 영업 중인 등 B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훈계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기타

사례

1 병역처분변경으로 자원입영 후 귀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지적 내용

A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르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 검사에서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병역처분변경(4급 사회복무요원 → 3급 현역) 후 입영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을 사유로 귀가한 ○○○에 대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하지 않고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처분

신청 취지

- 병역의무자가 현역 입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고, 원신분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할 경우 다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일반 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검토 내용 및 결과

- A지방병무청에서 질병치유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 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 진단서를 발급하여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적극행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참고자료

-
1.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4.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법규

참고자료 1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 신청이 접수된 일자	
건 명			
1.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 2) 자체감사기구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3)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배경			

※ 붙임: 기존 자체감사기구에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근거법령·해당 사업의 세부자료 등

참고자료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

일련 번호	소관 부서 (담당자)	제 목	감사 시 논의된 지적요지	면책 사유
1	○○부 ◇◇국 □□과 (홍길동)	(예시) ○○사업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 특혜 제공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 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 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면책요청

작성자: ○○부 감사관 이몽룡 (서명)

참고자료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감사 관련 소명서

1. 제출자	주 소							
	기관명		직명					
	성명		전화번호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소명자료제출 취지(해당사유 모두 표시)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적극행정면책()// 정상참작 등 기타()							
4. 소명요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1. 대리인 위임장 2. 소명자료(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원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u>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u>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278쪽 서식의 별첨자료1]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 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278쪽 서식의 별첨자료 2]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 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참고자료 4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법규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 2. 3.)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4호, 2019. 5. 14.,]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2019. 5. 14.>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에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 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5] [감사원규칙 제318호, 2019. 7.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2019. 7. 15.〉

1. “적극행정”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에서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감사원법」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5. “감사소명제도”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6. “감사소명자료”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 등을 말한다.
7. 제5호 및 제6호에서 “이해관계자”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8.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개정 2016. 6. 30.>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6. 6. 30.>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12. 13.]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전문개정 2018. 12. 13.]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6. 30.>

제3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實地監査)가 종료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별지 서식 별첨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③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시정요구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0.>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10조(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12조(적극행정면책 통보) 감사원은 제8조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13조(소명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개정 2016. 6. 30.>

제14조(보칙) ①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18호, 2019.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 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제30016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 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man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제30018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처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발간등록번호	11-1040000-000331-14
디자인 · 인쇄	한결엠 02-6952-0551
	 중증장애인생산물생산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